

09

2013 SEPTEMBER

法務士

특집

좌담 · 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실무 포커스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만화〉강박법무사 사무소

제8화 대포통장

田家秋淵

美花山房

佳石

美花山房

佳石

美花山房

佳石

田家秋淵

美花山房

佳石

美花山房

佳石

美花山房

佳石



대한법무사협회



마음을 여는 시

혹 되려니 말아요



최 동 희 ■ 법무사(강원회)

건강하려니
별일 없으려니
맘 놓지 말아요.

내일 있으려니
내년 또 있으려니
할일 미루지 말아요.

그 사람
늘 있으려니
내 가족
늘 보려니 말아요.

늘 말할 수 있으려니
늘 글 쓸 수 있으려니
기대하지 말아요.

내 몸이
내 것이려니
내 것이
늘 내 것이려니 말아요.

생명이
하늘에 있으려니
팔자가
정해져 있으려니
아예 믿으려 말아요.

세상일은

생각 없고
애씀 없이
혹 되려니 아예 말아요.





목 차 CONTENTS

권두언

특집

실무 포커스

지방세 사례문답

법무 동향

발언과 제언

일본 통신

생활법률상담

Q&A

알뜰살뜰 법률정보

《만화》강박법무사 사무소

안택식	■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4
편집부	■ 좌담 · 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6
이헌재	■ 기업법무 이야기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16
한상대	■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22
김의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등	26
유재국	■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8
편집부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32
편집부	■ 안전행정부, ‘지방세3법’ 개정안 입법예고	33
편집부	■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34
편집부	■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35
편집부	■ 서울중앙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41
박노천	■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파급효과	38
사토마키	■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42
정완희	■ 가사·민사 분야	52
유종우	■ 민사집행·민사 분야	54
임순현	■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상식	56
김희성	■ 【제8화】 대포통장	58

마음을 여는 시 최 동 희 혹 되려니 말아요 2 ■ **업무 참고자료** 용어로 보는 입법 이슈 36 ■ **법령·판례 예규·선례** 45 ■ **고전의 향기** 진영환 고사성어 이야기⑩ 운주유약 62 ■ **법무사의 서재** 임익문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 64 ■ **음악과 인생** 하철우 카탈린 뒤 프레의 「엘가 첼로 협주곡」 66 ■ **문화가 산책** 김청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68 ■ **수상** 최돈호 행복한 가정 71, 최진태 앵무새를 찾습니다 72, 박형락 지팡이로 걷는 나이 74 ■ **신규등록** 76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칭찬릴레이**⑥ 이성수 법무사 82

권두언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안택식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조통합? 로스쿨시대에도 변호사 수입료는 여전히 높은 벽

법무사제도는 구한말에 ‘대서제도’로 출범해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거쳐 1990년 ‘법무사’로 정착된 이후,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대행해 줌으로써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그러나 2008년 로스쿨제도의 시행 이후 ‘법조직역 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두되면서, 법무사제도 역시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법무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논자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의 배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법무사가 담당했던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책무를 법무사 대신에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로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 중국의 변호사 배출수는 우리나라의 몇 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80여 개의 공인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43,000여 명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 40여 개 대학의 법학부에 매년 20,000여 명이 입학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여 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에만 변호사가 18,000여 명이 개업하고 있다. 각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284명, 독일 707명, 영국 593명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9,3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법률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호사 숫자의 약 30배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직역 통합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로스쿨시대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수입료는 서민에게는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수입료가 로스쿨 시대 이후 약간 하향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 및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친근한 존재가 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보다 소득이 저하된 변호사들과 이들을 배출하는 로스쿨에서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하려는 직역통합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법조직역의 통합논리에 맞서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법무사의 책무를 꾸준히 강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사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한다면 법무사는 찾아가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감내하는 많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담코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일반서민이 법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

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해 결정적인 삶의 타격을 받는 소외 당사자들은 절실한 도움을 원하고 있다.

법무사회, ‘서민의 법률가’로서 사회적 활동 확대·강화해야

법무사는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절친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이들에게는 법무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었다.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것이 상례적인 절차다. 그러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으로 실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대개는 그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관보다는 직접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법무사의 도움이 실질적이다. 따라서 법무사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담코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일반서민이 법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기, 파산회생, 주택 및 상가임대차, 성년후견 분야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탈북자의 안전정착을 위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체제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각 구청이나 복지회관의 무료상담 및 법률교육프로그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 개정을 위한 사법환경변화 조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사상을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무사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업무영역의 확대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의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에서의 업무확대를 이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일본의 예와 같이 소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입법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전문지식의 확충과 인재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찰대리권을 따낸 경·공매사건 분야에서 현재 크게 활동하는 법무사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업무영역이 확대되더라도 그에 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가 양산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인 입찰대리권, 파산, 면책, 개인회생, 성년후견, 전자소송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수한 인재가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법과대학 졸업자들을 법무사로 유치하기 위해 법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이다. ◆



좌담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전국의 '모든 법무사'를 '조정위원'으로!

- 2013.1.1.~5. 조정성공률 41.8%, 13개 조정기관 중 4위...조정처리기간도 25.6일로 1위
- 조정위원 2인1조 운영, 조정위원 노하우 공유 세미나 개최, 전국 지방회로 확대 등 과제도!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다. 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연계 조정중재센터로 위촉받아 개소식을 열고, 법무사회관 7층에 3개의 조정중재실을 마련해 그해 10월 1일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1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송중률 조정중재센터장,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등 조정중재센터 관련자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활동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편집부>

▶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오전 10:30 ~ 12:00

▶ 장소 :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사회 :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 참석 : 송 중 른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장·상근 부협회장

이 영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이 기 걸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구 중 남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법제연구소장

“지난 1년간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다른 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 조정 성공률이나 조정기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회〉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조정성공률 4위, 처리기간 1위, 면담비율 1위 등 실적 우수

사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조정중재센터 1주년을 결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좌담회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지난해 9월 27일에 개소한 우리 협회 조정중재센터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1년간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다른 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 조정 성공률이나 조정기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송중률 센터장님께서 지난 1년간 조정중재센터의 활동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송중률 지난 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우리 조정중재센터를 서울지방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위촉해 주시고 1년간 잘 운영되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과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회에까지 참석해 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영진 조정담당 부장판사님, 그리고 조정부의 두 판

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년간 수고해주신 우리 조정위원님 38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우리 조정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개소한 이래,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8일부터 조기조정사건을 배당받기 시작해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326건을 배당받았다. 그 중 150건은 조정 성립, 159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48.5%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정성공률은 서울변호사회 중재센터, 상사중재원 등 다른 조정기관들에 비해 우수한 실적으로, 법원으로부터도 법무사의 조정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013 조정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법원 조정센터, 서울변회 중재센터, 한국소비자원, 상사중재원 등 13개 조정기관의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의 평균 조정성공률은 28.2%에 불과하나,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배당받아 처리한 192건 중 79건을 조정 성공하여 41.8%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기관 중 4위에 해당한다.

조정처리기간에 있어서도 13개 조정기관의 평균 처리기간이 40.4일인 데 비해 우리 센터는 25.6일이라는 최단 처리기간으로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에 임하는 ‘면담 비율’도 13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해 법무사의 출중한 실력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당일 세미나에서 여기 참석하신 이영진 부장판사님께서도 저희 조정중재센터를 크게 칭찬해 주셔서 센터장으로 매우 감사했고 크게 고무된 바 있다.

또, 지난 1년간 이런 좋은 성적을 올림에 따라 지난 3월 6일에는 서울중앙회의 이쌍수·고근배 법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고, 5월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위촉, 현재 활발한 조정활동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초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더욱 발전된 조정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 말씀 감사하다. 송 센터장님께서 초창기 우리 센터를 잘 이끌어주셔서 그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낳고, 법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서울지법 조정센터장을 역임하셨던 김대환 변호사님은 “법관과 조정위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법관은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일이라면, 조정위원은 동네촌장과 같다. 조정의 노하우는 경청이다”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조정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를 숄선수범해 확대하고 우리 협회 조정센터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영진 부장판사님께서 법관의 입장에서 그간 우리 센터에 대해 느꼈던 소감이나 평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진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그리고 송종률 센터장님과 조정위원님을 비롯한 법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기조정제도는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해 회부하고,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으로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 조기조정은 여기 대한법무사협회와 같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부연계형 조정과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부장판사 경력 등의 변호사 등을 위촉해 시행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그리고 소액사건만을 전담해 조정하는 ‘소액 즉일조정 및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등 총 4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우리 서울중앙지법이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서,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분쟁해결기관과 연계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제 스스로 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뿌듯해 하고 있다.

법무사 조정위원들께서 이렇게 모두 잘해 주시니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건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무사님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법무사, 조정위원으로서 안성맞춤의 자질과 능력 갖춰

사회 판사님께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시니 큰 힘이 난다. 이 자리에는 조정위원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업계의 대원으로 이기결·구중남 두 법무사님이 참석하셨다. 두 분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소감 및 평가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기결 오늘 이렇게 이영진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좌담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서 송종률 센터장님께서도 우리 협회 조정중재센터의 높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만 해도 조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13개 외부조정기관의 평균 조정성공률은 28.2%에 불과하나, 우리 조정중재센터는 배당받아 처리한 192건 중 79건을 조정 성공하여 41.8%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기관 중 4위에 해당한다.”

송 종 료 ■ 조정중재센터장



정위원 경력이 13년이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는 저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법무사님들이 많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어딜 가나 법무사들만큼 조정위원으로서 잘 훈련되고 높은 능력을 갖춘 맞춤형 자격사가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에서 10년 이상씩 민사법정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많아 연륜과 법률 지식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부지방법원만 해도 건축사, 의사, 대학교수,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조정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조직에서 민사법정 실무를 몸ے 익히고 나온 법무사들이 윤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만족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간이재판소의 소액대리 인정사법서사가 전체 사법서사 2만 여 명 중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사 6,200명 중에도 조정능력에 탁월한 자질을 가진 법무사가 아주 많다. 변호사들의 능력이 물론 뛰어날겠지만, 열정으로 보면 우리 법무사 조정위원들이 훨씬 낫지 않나 자평해 본다.

아까 이영진 판사님께서 우리 조정센터에 사건을 더 많이 배정해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든지 믿고 맡겨도 된다는 의미에서 자랑 겸해 한 말씀 드렸다.

구중남 저 역시 벌써 우리 조정센터가 1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1년 간 고생하신 송 센터장님과 이영진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임재현 협회장님께서도 처음 조정센터를 설치하면

서 외부조정기관에서의 중재가 법원 내에서 하는 것만큼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흐뭇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다.

얼마 전에 제가 대여금 사건 하나를 조정했는데, 청구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 그간 피고가 원금을 분할 상환한 것이 3,360만 원이었다. 그래서 원고에게 왜 소송을 냈는지를 물었다. 피고에게 감정이 안 좋아서 낸 것인가? 했더니, 피고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녀 패심해서 소송을 냈다면서 법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더니, 섣달 “할 수 있다”고 해 피고를 불렀다. 그리고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해 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가 벌떡 일어나 원고에게 인사를 하면서 “언니, 미안해요.” 하고는 엉엉 우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는 피고도 울고, 나중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어 조정실이 울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 조정위원으로서 이렇게 조정이 잘 되어 맺혀 있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재밌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려고 한다. 지난 1년간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

사회 구중남 법무사님의 경험 사례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쫄쫄하다. 앞서 이기결 법무사님은 조정위원을 13년간 해오셨고, 구 법무사님은 무려 23년을 해

오셨다. 그야말로 조정위원으로서 잔뼈가 굵은 원로들이다. 이런 원로 조정위원들의 그간의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한 권 만들어도 우리 법무사역사에 큰 업적이 될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조정중재센터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서 오늘날 조정센터의 기초를 닦으신 안갑준 조정위원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니 안갑준 위원님은 지금까지 총 17건의 조정사건을 맡아 단 한 건만 불성립되고, 16건을 조정 성립시키는 대단한 실적을 거두셨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다.

안갑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중재센터를 설립한다고 뛰어들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무척 감회가 새롭다. 그간의 실적과 성과 또한 우수해서 설립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다. 이 모두가 우리 법무사님들의 조정위원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소명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조정센터가 전국 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의 모범 케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정에 임하는 자세나 기술 등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한다.

저는 조정사건을 맡으면 제일 먼저 조정기록을 꼼꼼히 읽고 정밀하게 검토한다. 그런 다음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대강의 설계를 한 후, 판사님이 초고를 만들듯이 단계별로 원·피고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메모를 만든다. 조정에 들어가면 그 메모에 입각해 조정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

조정 당일에는 먼저 원고와 피고 모두를 앉혀놓고,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이 준 기회인 조정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기조정제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저의 법원 공무원 경력과 조정위원 경력을 소개해 당사자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그간의 경험 속에서 오늘 여러분 쌍방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할 테니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조정안에

승복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제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원고든 피고든 더 많이 양보할 측을 남겨놓고,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내보낸 다음 진지하게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다음에는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불러서 상대방의 양보선을 제시하고 함께 양보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해 준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중재가 된다. 이제 나머지 100%를 위해 제가 만든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에게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안을 받아달라”고 하면 대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하고 나온다. 만일 여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양보토록 설득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자평컨대,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신뢰감과 조정위원의 경력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정성과 소명의식 등이 당사자에게 잘 전달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 성립 때 큰 보람, 서민들과 가족간 분쟁은 안타까워

사회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사회적 갈등지수가 4위라고 한다. 고소율도 일본에 비해 40배가 높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갑준 위원님같이 ‘조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조정위원을 하시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정센터의 성과를 짚어보는 한편으로,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송중률 센터장님은 지난 1년간 39건이나 되는 많은 조정사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경험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제 스스로 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뿌듯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다. 조정센터를 통해 법무사님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영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송중률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정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 마침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조정센터를 개소한 터라, 현재까지 제가 받은 수당을 모두 센터에 기부한 상태다. 센터장으로서 공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어여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조정 당사자들은 힘겨운 삶의 고통이겠지만, 제3자로서 조정위원들은 그들을 보면서 다양한 인생살이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 큰 보람도 느낀다.

조정이 잘 성립되는 날은 정말로 큰 돌덩이 하나 떨어낸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다. 물론, 조정이 잘 되지 않아 끝내 불성립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우울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맡은 사건인데 한 동네에서 살면서 단돈 20만 원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어온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70대 중반의 복스럽게 생긴 할머니인데, 자기 집의 방을 세를 놓는다고 대문 앞에 방을 붙였다. 그런데 맞은편 부동산중개사가 그것을 보고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 계약을 하면서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소개비를 내냐, 못준다”고 해 화가 난 중개인이 소송을 건 것이다.

판결은 20만 원을 주라고 났는데, 할머니가 억울

하다며 항소를 해 조정으로 넘어온 거다. 제가 조정을 하면서 15만 원에 서로 합의토록 거의 중재를 했는데, 막판에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못살겠으니 죽는 약을 달라며 주저앉았는데, 정말 나라도 5만 원을 주고 해결해 주고 싶더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새삼 안타까웠다.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기걸 저도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다. 어머니가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사정이 있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하나 키우고 살던 딸이 마침 독신으로 살던 외삼촌이 파킨슨 병에 걸리자 자신이 나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었던 거다. 살아생전에 외삼촌이 자신이 죽으면 금고 안에 재산이 좀 있으니 열어서 네가 잘 처분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외삼촌이 죽고 금고를 여니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금세 외가로 퍼졌다. 망자에게 직계 상속자가 없으니 결국 형제자매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형제들이 모두 모여 딸의 어머니 이름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승복해서 해결하자고 청구를 한 것이었다. 막상 당사자들을 만나보니 사람들이 비교적 온순해서 제가 제시한 조정안을 잘 따라주어 결국 잘 해결되었다.

구중남 저도 가족 간 분쟁사건 하나를 조정해 준 적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된 며느리가 함께 살던 집을 시아버지가 처분하자, 시아버지를 상대로 그간 들어간 은행대출이자, 재산세 납부한 비용, 시아버지 부양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시아버지를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돈도 아들부부가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고, 재산세도 그 큰 집에서 자신은 작은 방 한 칸 쓰고 나머지는 아들부부가 다 썼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한 푼도 못준다고 펄펄 뛰었다.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고민하다 시아버지를 불러 “며느리는 미워도 손자가 살 집은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에서 연립주택 지하 방 한 칸 얻으려 해도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집 판 돈 5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그냥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주시라”고 설득을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들이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그 며느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되어 다행이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매정한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안갑준 저도 조정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탄이 날 때 가장 안타까웠다. 얼마 전의 한 사건도 그럴 뻔하다가 조정이 잘 성립되어 소개할까 한다.

강북지역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슬하에 4남매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결국 외국에 있던 둘째아들이 귀국해 사망할 때까지 돌보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둘째아들이 어머니 사망 후 그 연립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누지 않고 3~4년간을 혼자 차지한 채 월세금을 받아먹고 하니까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단합해서 그 연립주택에 대해 둘째아들 몫을 뺀 나머지 상속지분만큼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조정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

니 형제자매간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조금씩 이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

형제들을 따로 부르기도 하고 모아서 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를 잃으면 되겠냐, 어머니 돌본 건 인정하지만 형제들과 등지면서까지 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돈 한 푼 안 갖고 혼자 몇몇한 게 좋지 않느냐, 열심히 중재를 했다.

결국 “지금까지 작은아들이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그냥 포기하고 양보해라. 대신 작은아들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집을 팔아 형제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나눠 주라”고 조정안을 냈고, 극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선후배 간에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 결국 조정을 통해 잘 풀려 화해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인간관계들이 돈으로 인해 깨지고 파탄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돈이 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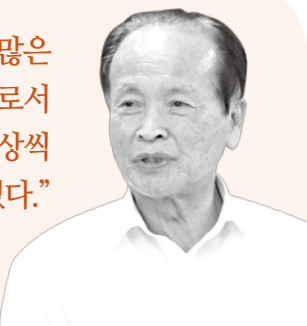
조정위원 2인1조 운영, 노하우 공유 세미나도 필요해

사회 돌아가며 소중한 경험담과 조정에 대한 노하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앞으로 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나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구중남 저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위원을 2인 1조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각급 법원에서는 현재 조정위원 2명이 함께 사건을 맡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어려운 사건들을 조정해 가는데, 우리 협회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신다면 더욱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끝나면 “조정 불성립” 결과만 명시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저만 해도 조정 경력이 13년이다. 우리 업계에는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법무사들이 많다. 법무사들만큼 조정위원으로서 잘 훈련되고 높은 능력을 갖춘 자격사가 드물다. 법원에서 10년 이상씩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 기 결 ■ 조정위원

이렇게 대립되었고, 그래서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에 대한 조정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식으로 조정 불성립 이유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자료를 남겼으면 한다.

그러면 이후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파악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끌어갈 것인지 판단에도 도움을 주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기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조정위원 두 사람이 함께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정불성립 이유를 쓰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 재판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정위원들이 이미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또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당한 설득을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재판장이 참고할 수 없다면 그 많은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사장되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영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양식이 바뀌었다. 우리 법원에서 단독판사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다. 조정에 회부했는데 불성립되어 돌아오면 이유를 알 수 없어 괜히 보냈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판사도 있었다.

이전에는 재판절차와 조정절차를 분리해야 재판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이유를 쓰지 않게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과 재판절차를 굳이 분리하지 말고, 서로 연계해서 조정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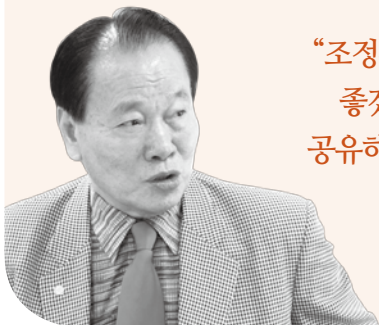
마침 「민사 및 가사처리에 관한 조정예규」에도 조정위원들이 말한 것을 토대로 조정담당 판사가 조정 실패 이유를 간략히 적어 본안재판부로 보내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또, 그 기록을 토대로, 불성립된 사건이 본래 재판부에 가서 조정된 사례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통계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다. 비록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조정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렸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니 재판장이 한 마디만 톡 건드려도 금세 마음이 풀어지고 화해가 잘 되는 것 같다.

구중남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기간이 40일이다.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일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한다.

우리 센터가 다른 외부조정기관보다 사건처리 기간이 짧다는 것이 좋은 성공사례이기도 한데, 송달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빨리 송달을 해서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도 벌면서 조정 성공률을 더욱 높이면 좋을 것 같다.

또, 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들의 세미나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면 좋겠다. 그간 조정을 하면서 느



“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들의 세미나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면 좋겠다. 그간 조정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나 각자의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세도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정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한다.”

구 중 남 ■ 조정위원

끼는 점이나 각자의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세도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정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한다.

송중률 구중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말씀대로 처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배당 받은 사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정위원 세미나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번 가을에 날씨 좀 선선해지면 곧 1차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전국의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안갑준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 법무사의 조정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성과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법원으로 확대해서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회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조정센터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법원측에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 법원도 앞으로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회가 있는 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조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이영진 안갑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법원에서는 재판하는 시스템, 즉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예전에는 판결 위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판결을 빨리빨리 내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풀아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4위라고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해소비용이 약 300조 원이라고 한다. 1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분쟁조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원은 수소법원 판사 혼자서 복치고 장구치는 조정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재판 전에 초기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굳이 딱딱한 법원에 나와서 받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친밀한 외부기관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 당사자에게 더 좋을 것이다.

이를 ‘유비쿼터스 조정’이라고 칭하는데, 법원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여기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실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에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법무사님들도 이런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해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회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조정센터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법원측에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 우리 지방회가 있는 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조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안 갑 준 ■ 조정위원



주시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들이 각 지방회 사무실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조정사건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는 그 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얼마나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우리 조정위원들이 그런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한 가정에 평화를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다면 성공률과 관계없이 이미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이영진 판사님 말씀이 매우 감동적으로 들린다. 앞으로 우리 협회 조정센터를 더욱 열심히 밀어주시기 바라면서, 법원의 입장에서 우리 센터에 요청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달라.

이영진 조정 활성화 기조가 더욱 확대되고 뻗어 나가려면 조정사건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사들도 조정사건을 많이 보내줘야 하지만, 일선에 있는 법무사님들도 소장을 내시지 말고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도록 협회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결국 그런 사건들이 모두 다시 협회 조정센터로 와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시간과 경비 면에서 국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협회 차원에서 전국 법무사님들께 조정신청을 많이 독려해 주시라.

조정신청 인지대도 앞으로는 5천원 정액제가 된다. 지난 19일자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지만, 현재 관련 예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또, 조정신청서나 소장 내실 때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상대방 연락처를 꼭 적어주셨으면 한다. 조정절차에서 소환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데, 간혹 없을 때가 있어 못 보내기도 한다. 사소하지만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구중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법무사님들 중에 조정의 달인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과 함께 그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세미나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님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님들의 노하우와 기법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외부연계형 조정뿐 아니라 법원 상근조정위원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사님들 중에 특히 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법원의 요일제 상근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정제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아주 상세한 요청사항과 부탁 말씀 감사드린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오늘의 좌담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나온 논의들이 앞으로 조정센터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속에 신뢰받는 조정센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 ◆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협회, '기업법무 인재교육·취업알선' 노력해야

영세함, 전문교육시스템 부재, 「법무사법」 제약, 제도권 외면 등이 기업법률시장 진출에 장애
전문성 제고, 사무소 기업화, 협회 인재 양성시스템 및 기업홍보 등을 통해 비전 만들어야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많은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 법무사
2. 기업법무 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 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 본 법률시장
5.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6. 법무사의 기업 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I. 들어가면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들의 기업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은 변호사에게, 회계감사나 컨설팅은 회계사에게, 특허출원

업무는 변리사에게, 세무조정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며, 내부적으로도 이들 전문직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물론 법무사도 기업으로부터登記, 공탁,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무는 해당 업무분야(주로 법무)에서는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규모를 불문하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의 특성¹⁾과 법률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법무사업계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여 실기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업법률시장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 규모도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에 대하여 그것이 설령 부동산등기와 공탁과 관련되어 있을 지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기업 내에 법무담당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법무사도 기업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정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아래에서 서술할 몇 가지 문제점만 극복(물론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하면 다른 자격사들 못지않게 기업법률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법무사 개인과 협회의 노력은 물론이고,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II.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필자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많은 법무사들이 금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등기, 공탁, 소송, 보전처분, 경매 등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리가 많고 이러한 사건들을 수임하려는 법무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해가 지남에 따라 수임보수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도 아울러 목격하게 되었다.

게다가 변호사들과 일부 소형 로펌들도 소송뿐 아니라 등기 및 보전처분사건까지 수임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내부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처리를 위임하

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도 적응해 가는 유능한 법무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들 법무사들 간의 연대(예:기업화)와 협회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있다면 단시간에 새로운 시스템과 전에 없던 수익모델을 갖춘 기업전문 법무사 사무소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기업법률시장 참여의 장애요인

가. 영세한 규모

의뢰인이 기업이라도 의뢰인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기업사건(예, 중소기업이나 은행 지점)인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법무사 사무소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며, 이런 정도의 거래고객만으로 십사리 사무소의 규모를 늘릴 수도 없다.

하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업의 업무를 맡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수익은 높지도 않으면서 업무량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무소는 사무소대로 일에 치여 허덕이고, 의뢰인인 기업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까봐 불안하게 지켜보다가 결국 규모가 큰 로펌으로 거래를 바꿀 위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체계적인 영업활동이 잘 안 되고²⁾ 보수협상에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나. 전문성 부족

이는 법무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법무사 양성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 법무사의 경우 상당한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교과서를 본다고 터득

1) 필자도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생활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 공탁, 경매, 소액사건, 가족관계, 개명, 개인 파산 및 회생 등으로, 이들 분야는 마땅히 상담할 변호사가 없기도 하다.

2)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 법무담당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법률이슈와 관련한 뉴스레터를 보내며 각종 기념품(볼펜, 달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시험출신 법무사의 경우 가장 최근까지 이론공부를 하여 법률이론이나 논리적·법적 근거를 찾는 부분에서는 우수하지만, 정작 실무를 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법원 등의 실무 노하우나 시험 출신의 이론지식이 상호 교환되고 있지 않아 각자(특히 시험출신 법무사)가 업무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위를 받은 것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업계 선배들로부터 실무경험을 전수 받아 도제식으로 길러진 후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험출신 법무사들의 경우 이론시험만을 통과한 후 형식적이고 짧은 실무수습을 거쳐서 개업 시장에 내몰리는데, 이런 경우 경험부족으로 고난이도의 업무는 맡지 못하고 단순한 사건만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로펌의 경우 선배 변호사가 후배(신참) 변호사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론 지식으로 무장한 후배 변호사들로부터도 많은 자극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즉, 선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습득한 경험과 실무지식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짜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후배 변호사가 법률이론을 동원하여 소장이나 자문의견서의 초안을 잡는 식으로 협업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 업무영역의 협소함

「법무사법」 제2조를 살펴보면, 법무사의 주된 업무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이다. 변호사는 차치하고라도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직무범위)와 비교하면 조정, 중재, 진단, 상담, 자문, 지도 등의 소위 ‘컨설팅’ 분야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업무영역은 하나도 없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 절차에서 재산취득과 관련한 상담 및 매수신청 대리」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법무사에게 치욕스럽기까지 한 것이다.³⁾

예를 들어 세무사에게 「지방세법」 중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 심판 대리만 하라고 하거나, 변리사에게 시험 당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 분야의 특허심판 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⁴⁾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가 법률과 관련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라서 변호사 못지않은 광범위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일까?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대량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직원이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전적으로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의 제약으로 법무사 선에서 업무가 완결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기업은 사건을 의뢰하고도 직원들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겨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제도권의 외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대법원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솔직히 대법원은 법무사를 활용하거나 이를 위한 제도 변경에 지나치게 변호사(법)를 의식하는 것 같다.

다른 정부부처의 소관 법률에서도 법무사에 대한 홀대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법무부 소관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

3) 그나마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업무이다.

4)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무사’는 하위 시행령에서야 마지못해 규정되었고, 역시 법무부 소관 법률인 「상법」 제542조의13에서는 법무사가 준법지원인⁵⁾으로 포함되지도 못하였다.

기업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거나 이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이를 강제 또는 유도하는 각종 법률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제도권의 외면도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Ⅲ. 업계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

1. 법무사 개인의 노력

가. 전문성의 함양

최근 전문직들 사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력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력도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일정 수입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회소성이 보장되던 시절에는 굳이 어려운 일을 맡지 않아도 사무실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

다. 하지만 지금은 난이도가 낮은 업무는 그에 걸맞게 보수도 낮아지고 극심한 경쟁으로 일감을 얻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내구성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업무 수준이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된다.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 회사 직원들도 법무사,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필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다음부터는 일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예전에 계열회사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법인등기 업무와 관련해 모 법무사를 선임하였는데, 담당직원이 법무사가 제시한 보수가 타당한지 필자에게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도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서 보수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⁶⁾

이런 경우 보통은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도 견적을 받아보는데, 해당 업무의 경우 그 법무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담당 회계법인에서 적극 추천한 곳이라서 선불리 다른 법무사 사무소의 견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회사나 담당직원 입장에서 보수 몇 푼 절감하는 것보다 문제없이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사 사무소는 보수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 노력(블루오션 전략)

위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법무사는 제도적 한계⁷⁾로 인해 도무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 물론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있겠지만, 이는 법무사업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

최근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나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도 결국에는 법률제

5) 물론, 법무사가 다루는 법률이 변호사에 비해 협소하므로 준법지원인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6) 물론 법무사보수표가 있지만 통상적인 등기사건이 아닌데, 함부로 보수표만 가지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7) 필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던 시절, 의뢰인(피고)의 준비서면을 몇 번 써주고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의뢰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대방과 소송 때문에 연장을 벌이고 있는데, 필자에게 직접 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필자에게 출장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필자는 해당 업무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면서 거부한 적이 있었다. 동료 법무사들에게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뒷받침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극단적으로 법무사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의 업무를 하면 모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도 현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급박하기에 제도의 탓만 하면서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자본축적이 미약한 개별 법무사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년후견지원본부를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대규모 단체가 개별 법무사들이 받을 리스크를 일부 수용하여 완충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를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의 기업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은 개인사업자가 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 거래 협상에서 개인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2. 협회의 장기적 안목의 투자 및 지원

가.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하려면 그 조직 내부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구직자들이 기회만 되면 진입하려고 노력할 정도의 인기도 있어야 한다. 이

런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와 의사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인재들인 데다가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적은 시행착오로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 자질은 우수하지만, 자격취득 이후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빈약한 편이다. 변호사, 의사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정과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치고, 회계사의 경우 대체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선배 회계사의 지도 하에 수년간 격무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실무에 대한 실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음에 비해, 법무사는 이렇다고 할 만한 교육이나 수련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재 기존의 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부족한 실정인데, 결국에는 협회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기업법무와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과의 거래와 달리 주의할 점이나, 특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분야에서 기업 고객과 거래가 많은 기업전문 법무사를 강사로 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나. 사회 및 제도권에 대한 법무사제도의 활용 적극 요구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사제도는 변호사가 많지 않던 시절, 국민들의 법원, 등기소, 검찰청 업무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는 법무사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⁸⁾

먼저, 필자는 일단 어떤 이유이든 사회적 필요에 의해 탄생해 현존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 보다 힘이 있는 직업군이라 하여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너희는 이제 없어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과연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정의는 자신들의 성역에는 결코 도전하지 못할 취약계층만의 것인가? 우리가

8)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등에 대하여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라에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가 모두 없어지고, 그 모든 업무를 변호사 혼자 처리한다면 과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 변호사가 직접 처리도 못할 사건(기장,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들에 대해 세무사나 변리사가 되었어야 할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부려먹으며 그 과실만 따먹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필자가 법무사 등 변호사 외 자격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격폐지 요구논리에 장황하게 반박을 하는 이유는, 법무사들이 이러한 변호사의 논리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합당한 과실을 취득하게 해 달라고 사회와 제도권에 요구하라는 것이다.

다.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

이는 주로 기업체 취업을 원하는 법무사들을 위한 협회의 지원방안이 아닌가 한다. 최근 기업에서는 사내변호사 채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법무팀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도 상당수가 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무업무는 소송이나 법률자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수하여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공탁,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 법원 관련 업무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소송이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위의 업무가 결정적인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무업무가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는 기업체라면, 법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사내변호사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도

법원, 검찰 출신 법무사의 경우 간혹 기업체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체 입사를 법무사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⁹⁾, 기업에서 법무사 채용을 원하는 경우, 협회가 적극적으로 채용 알선을 나서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솔직히 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업이 법무부서의 채용 대상으로 변호사와 법학전공자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채용여력이 된다면 법무사 자격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기업체 입사에 적합한 법무사 후보군만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IV. 마치면서

이상으로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까지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를 적어보았다. 필자가 다른 법무사들에 비해 법무사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것도 아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업계를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배, 후배, 동료 법무사들에게 회사라는 조직의 보호막 아래에서 비교적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혹시라도 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기고한 원고와 함께 필자가 기고한 모든 원고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법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추리고 고심해서 쓴 글이다.

그동안 필자의 원고 내용 중에 무례하거나 다소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지면 및 시간 한계와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글을 쓰고자 한 의도를 반영한 것뿐이고, 필자의 진심을 그렇지 않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9)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공식적인 공문과 함께 기업체 홍보용 팸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 공탁’의 제문제

특수목적 변제공탁, 불측 손해 발생 가능 ... 항소심 전부·일부 패소 예측될 때 활용 바람직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가집행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측에서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또는 변제공탁한 후 항소 제기하는 경우를 포함)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런 경우 채무를 다투면서, 즉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제(공탁 포함)할 경우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와 가집행에 기한 변제 및 변제공탁의 효력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 주>

1. 변제공탁의 일반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않고,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민법」 제497조와 488조 및 「공탁법」에 따라 공탁을 해야 한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가 소멸되고(「민법」 제487조)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되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 보관자(은행)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72.5.15. 72마401).

다만, 공탁을 회수하게 되면 공탁 시에 소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결 1981.2.10.80다77).

1) 가집행선고제도의 기능

‘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형성적 재판이다. 판결의 확정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어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하게 되며,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노려 남상소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 가집행의 효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행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비록 피고가 상소해도 그것만으로 그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2. 가집행선고제도의 기능 및 효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본집행과 달라서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자발적으로 변제할 지라도 이는 확정적 변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3.10.8. 93다26175,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상급심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제는 채무자의 존재를 인정한 본래 의미의 변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가 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조건부 변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다.

“피고들이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피고들에 의한 임의의 변제공탁으로 본다면 … 가령 원심의 심리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들의 부대항소가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취소 부분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가정하여 볼 때, 이러한 경우 위 변제공탁된 금원은 채무 없음을 알면서 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피고들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1994.11.11. 94다22446)

3. 가집행 면하기 위한 조건부 변제공탁 인정 여부

위에서 밝혔듯이 변제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목

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장래의 채무, 불확정채무나 조건부 등은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않지만,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 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2002.3.7. 법정 3302-81호 질의회답)

4.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조건부 변제공탁의 법적성질

우리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본래 의미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5. 조건부 변제공탁(이하 ‘특수목적 변제공탁’)을 활용하는 이유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즉시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가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 : 특히 피고측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가집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측 또한 피고의 타 재산보다 위 공탁금으로부터 조기에 판결주문 상 금원을 출급할 수 있어 필요 이상의 금원 소비를 방지하고 시간적으로 조기에 만족할 수 있다.

2) 1심본안 판결주문상 지연이자 확대방지 목적 : 만일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만큼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조기에 변제공탁을 하면 그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3) 1심판결(손해배상, 공사비 등 사건)을 전부 뒤집을 정도의 항소심 판결을 확고히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즉 일부금액은 공탁자 스스로 지급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차후 위 공탁금 회수에 시간·경제적 여유가 가집행 담보공탁에 비해 수월한 점(이는 상대적 개념임) 등이다.

6. 특수목적 변제공탁과 가집행정지담보공탁의 비교

	특수목적 변제공탁	가집행정지 담보공탁
법적 근거 여부	판례·선례 상 인정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501조, 500조, 502조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변제공탁	담보공탁
관할 (공탁소)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 공탁소	특별한 규정 없음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 주소 증명서면 등(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제공명령서 등
공탁물	현금(판결주문상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원칙 현금(법원에서 명령한 금원).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험증권(민사소송법 제122조)
1심 가집행 판결주문상 지연이자 차단효	차단효 있음.	차단효 없음
공탁금 출급절차	「공탁법」 제8조 및 공탁규칙에 따름	「공탁법」 제8조 및 공탁규칙과 행정예규 952호(4호 가목 및 나목)

공탁금 회수절차	「민법」 제489조(즉, 공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기에 피공탁자는 공탁승인을 하거나 통지해야 공탁회수를 차단시킬 수 있음.)	공탁자는 임의적으로 회수불가.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회수 가능(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 증명 등)
채무변제 효력 인정 여부	변제효 인정(단, 본안 확정 시 효력 발생)	변제효력 없음.
상소 여부	1심 본안 확정 후 변제공탁은 본래 의미의 변제공탁이나 본 특수목적 공탁은 상소를 전제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확정 전 공탁제도임.	상소제기는 전제조건이며 필수적임.

7. 상소심에서는 변제 또는 변제공탁 여부를 참작해 판결주문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선고되어 피고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금원 및 이자를 합산해 공탁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본안에서 위 공탁한 사실(또는 공탁금을 출급)이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반소)

즉, 판결 선고 당시에는 피고의 변제(변제공탁)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기에 이를 참작할 필요 없이 선고하되(판결주문 작성),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 비로소 위 판결주문 상 청구채권 등이 소멸하게 된다는 취지다.

8. 원고(피항소인)가 위 판결문에 의거하여 피고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할 경우 피고(항소인)는 청구이의의 소를 다룰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

즉, 가집행에 기한 채권 소멸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변제나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9. 원고가 피고의 다른 재산을 가집행을 할 경우 강제집행정지 방법론

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 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타 재산에 대해 가집행을 할 경우에 피고가 위 공탁서를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서류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법원 실무 및 판례에서는 공탁서를 변제 증명 문서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즉, 조건부 변제공탁(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 4

호 서류에 해당하는가, 또는 4호를 유추적용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의 사건으로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4호에 준하는 서류로 유추적용 되어야 상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51조를 적용받게 되어 정지기간은 2월이며, 이는 2회에 한하여 총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가집행을 면할 목적이고 가집행에 기한 변제공탁인 바,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가 피고의 다른 재산에 또 가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남용 또는 신의칙상 집행의 필요성을 배제시킬 만한 사유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정지사유가 된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1조처럼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본다.(사건)

10.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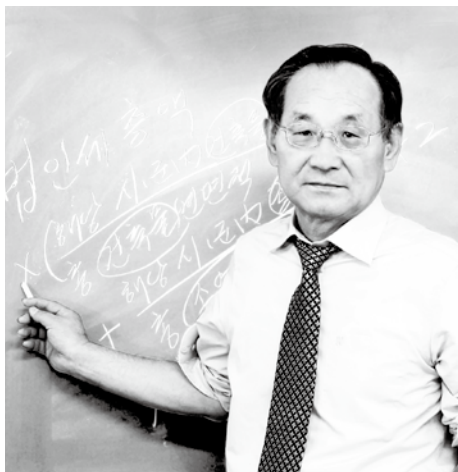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501조 가집행정지 담보공탁은 법규상 규정에 따라 그 방법론이 안정적인 데 비해 위 특수목적 변제공탁은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인정되는 제도이나 「공탁법」 상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변제공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할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1조 가집행정지 담보공탁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고, 일부 패소(승소)나 전부 패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지연이자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위 특수목적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 서류 중 피고의 다른 재산을 처분(사해행위는 논외로 함)함과 동시에 위 공탁금을 회수하게 될 때, 그 염려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공탁수락통지서를 공탁소에 발송해 공탁금 회수를 차단시킨 후에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정적일 것이다. ◆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호 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김 의 호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갑’은 ‘을’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문제가 있어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여의치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취득세의 성질은 행위세로서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민법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취득행위가 성립하면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소멸, 변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행위로서 귀 질의는 승계취득으로서 매

매에 의한 취득이 되며, 매매(연부취득은 별도)에 의한 취득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귀 질의는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말소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귀 질의의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의 경우 그 원인무효의 사유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는 이미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귀 질의는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등기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연부취득이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를 말하는 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해당 지급액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러나 연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 소유

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이상에서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합니다.

질의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종과세

경기도 관내에서 제조업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한 지 8년이 경과한 'A' 법인은 업무형편상 본점을 서울시내로 이전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7만 5천 원을 납부하였는데, 금번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지방법인이 서울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종과세 대상이 되어 설립 세율로 종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이전의 세율에 대해 종과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과세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단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즉, 종과세대상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종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종과세대상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그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종과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종과세대상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법인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종과세 된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에서는 종과세대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이전당시의 자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bullet \text{자본금} \times 1\text{천분의 } 4 \times 100/300 = \text{산출세액}$$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공제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바, 이전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함으로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 대해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함께 부과합니다.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갑, 을, 병, 3인이 그들의 공유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이를 자본금으로 한 A법인을 설립할 경우, A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그 신설법인은 현물출자한 부동산(여기서는 토지)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법인장부에 기표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서울은 1천분의 40(사실상 농지는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므로 별도 부과하는 것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상에서 그 신설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그 토지 취득 및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3배 종과세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그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며, 당초 현물출자한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유 재 국 ■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경제학 박사

UN 인구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0년 대비 2050년에는 27%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인구는 2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인구감소를 겪어 본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경험적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이슈와 논점』 696호에 게재된 소논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떤 입법적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 인구를 통한 미래 예측

최근 ‘미래’에 대한 연구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다루어야 할 미래에 대한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이다.

인구는 사회변동의 기본적 요인이자 사회변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 변화의 흐름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고찰하지 않고 문제를 인지한 후에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인구의 총량 및 구조에 대한 예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210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늠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UN 인구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 인구와 2050년의 중간 수준 예측치를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이면서 2050년까지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가 감소하는 국가는 198개국 중에서 19개국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감소율이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0년 대비 2050년에는 27%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노인인구는 2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과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동시에 유소년(0~14세)인구의 감소도 22%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의 인구국(局) 자료인 <표 1>을 보면, 첫째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조차도 현재 인구감소를 겪어본 국가가 거의 없어¹⁾ 이것이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기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연역적으로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체 변화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정책 수단에 따라 가

1) 2010년 이후 일본 및 독일은 총인구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율 및 순위

순위	지역	생산가능인구 (15~64세) 증감률	유소년인구 (0~14세) 증감률	노인인구 (65세 이상) 증감률	2010년 인구기준(만 명)
	전세계 평균	30%	3%	204%	700,114
1	우크라이나	-33%	-9%	27%	4,700
2	일본	-31%	-14%	48%	13,453
3	쿠바	-30%	-38%	160%	1,158
4	포르투갈	-30%	-27%	78%	1,116
5	루마니아	-29%	-17%	70%	2,215
6	대한민국	-27%	-22%	236%	4,914
7	러시아	-27%	-1%	63%	14,710
8	폴란드	-27%	-9%	89%	3,958
9	독일	-25%	-2%	58%	8,649
10	이탈리아	-21%	-1%	70%	6,410
11	헝가리	-21%	-2%	48%	1,038
12	세르비아	-21%	-26%	60%	1,016
13	체코	-19%	12%	95%	1,087
14	중국	-19%	-33%	235%	135,955
15	그리스	-16%	6%	76%	1,191
16	스페인	-14%	9%	125%	4,835
17	태국	-12%	-28%	218%	7,028
18	네덜란드	-12%	-4%	99%	1,726
19	벨기에	-6%	11%	68%	1,125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File 1B: Total population (both sexes combined) by five-year age group, major area, region and country, annually for 2011-2100 (thousands)), 2011. 의 자료를 가공함.

저다 줄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도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집행 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예측

인구예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

회입법조사처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인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²⁾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³⁾의 변화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2030년까지의 목표 합계출산율을 선형적으로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그 합계출산율을 유지한다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합계출산율이 1.7이라면 2030년까지 선형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 1.7명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7명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합계출산율 수준을 1.2명에서 2.2명 수준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2.1

2)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인구, 가구, 에너지, 주택, 식량 등의 수급을 예측하고 정책 실험(policyexperiment)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을 개발 중이며, 이와 관련된 3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3)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세~49세)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다.



〈표 2〉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2013년의 목표합계 출산율*	2050년				2100년			
	총인구	노인인구 부양비	유소년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	총인구	노인인구 부양비	유소년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
1.2	4,262	0.83	0.16	0.99	1,923	1.59	0.13	1.73
1.3	4,364	0.80	0.18	0.98	2,149	1.20	0.18	1.39
1.4	4,428	0.78	0.20	0.98	2,289	1.06	0.20	1.26
1.51	4,500	0.76	0.21	0.97	2,458	0.93	0.21	1.15
1.6	4,560	0.75	0.22	0.97	2,606	0.84	0.23	1.07
1.7	4,627	0.73	0.24	0.97	2,785	0.76	0.24	1.00
1.81	4,702	0.71	0.25	0.96	3,004	0.68	0.26	0.94
1.89	4,758	0.70	0.26	0.96	3,174	0.64	0.27	0.91
2.01	4,843	0.68	0.28	0.96	3,455	0.58	0.29	0.86
2.1	4,908	0.67	0.29	0.96	3,681	0.54	0.30	0.84
2.19	4,973	0.66	0.30	0.96	3,914	0.50	0.31	0.82

※ 2010년부터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는 선형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여 목표합계출산율을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목표합계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임.

명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총인구 자체를 2100년까지 증가시킬 수는 없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0년을 전후로 하여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적게는 1,900만 명에서 많게는 3,900만 명 수준을 보였다.

인구의 양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유소년인구부양비⁴⁾와 노인인구부양비⁵⁾,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인구부양비⁶⁾는 205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3년 현재 즈음이 인구부양비가 가장 낮은 시점이다. 향후 노인인구부양비가 2030년경에는 0.5 수준으로 2050년경에는 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인구부양비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여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구 부양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인구 총량은 줄어들고, 특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는 대폭 감소할 것이며 반면에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큰 변화를 이끌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4. 정책적 시사점

유일무이하게 결정된 미래는 없으나, 인구와 같이 변화의 흐름이 더디고 관성이 강한 변수를 예측해 봄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비하여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시스템도 이에 부합되는 구조변화를 해야만 한다.

인구감소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수 산업의 수요 감소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산업의 구조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사업퇴출 비용 등을 적절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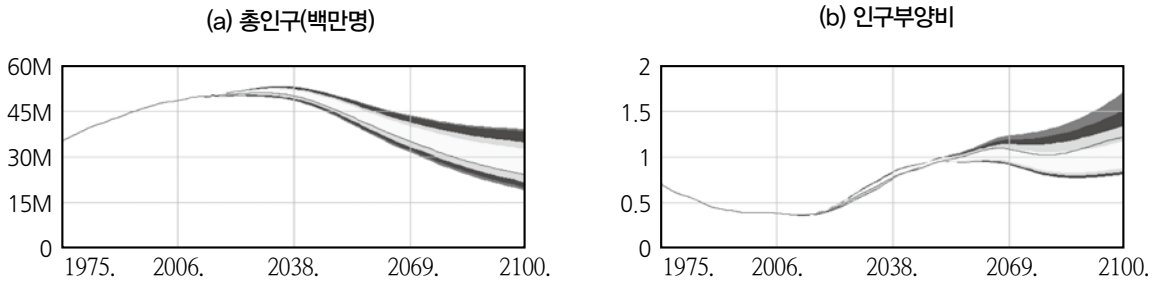
4) 유소년인구부양비 = 유소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5) 노인인구부양비 = 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6) 인구부양비 = 유소년인구부양비 + 노인인구부양비



〈그림 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부양비 예측(100회 시뮬레이션의 결과치의 분포)



여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만, 공제제도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토목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인구의 감소로 도로, 에너지, 통신 설비 등의 이용률이 저하되어 미래세대가 인상된 가격이나 철거비용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편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인구구조 특성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번 투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미래의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인구기반의 미래 예측이다.

셋째, 연금 및 복지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큰 흐름이며, 이에 부합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부담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성이 높아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므로 부단한 논의를 통해 비용 지급자와 서비스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가 보다 중요해졌다. 생산 인구가 감소할수록 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다. 사이버네틱스는 사람-기계 그리고 기계-기계 간의 제어와 통신(control &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총량이 사회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인구부양비가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이용하여 생산자는 생산방식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software)와 관련된 교육·지식 시스템 및 새로운 경제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5.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등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국회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인구특성에 부합되는 행정·경제·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법적 준비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구조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임대차계약서,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토록

당사자확인 등 계약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 등 명시해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대폭 개선되었다. 법무부는 그간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 사항들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45%(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다수의 국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통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도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중 일반적인 내용만 명시돼

있어 임차인 권리보호에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새로 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①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사항과 ②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의 계약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편집부>**

〈 민원 및 피해사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표준계약서로 보완 〉
이 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국제납부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함. ('12.6 뉴스1)	선순위 담보물권,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마련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란」 ⇒ 「미납국세 확인란」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을 마련하여 선순위권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함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있나요? 참고자료 좀 주세요. (종로구 ○○씨, 서울시 민원)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 확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다가구 주택의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임대차기간 중 누수에 대한 수리비 부담 관련 분쟁 발생. (노원구 ○○씨, 서울시 민원)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 「입주 전 수리」 ⇒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에 관해 당사자로서 교섭력이 있는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하여 수리비를 돌려 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함
'12. 9. 계약만료,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금천구 ○○씨, 서울시 민원)	기간의 연장·재계약 (계약서의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등)	⇒ 「묵시적 갱신」, 「합의에 의한 재계약」 민원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14. 9.까지 기간 주장이 가능한 점 등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알게 됨 ⇒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차임증액청구」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증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약속해 공정증서까지 받고 이사했는데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대구시 ○○씨, 국민신문고 민원)	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재 등)	⇒ 「계약의 해지와 해제 사유」, 「비용의 정산」 등을 규정하여 기간종료 사유와 비용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불완전한 공시방법 이어서 거래안전상 어쩔 수 없지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날 집주인이 저장권설정등기를 하면 후순위가 되어 불안합니다. (광주시 ○○씨, 국민신문고 민원)	특약사항 예시	⇒ 「보증금의 안정적 확보 방법 예시」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기로 한 날짜보다 이를 후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약사항 예시

안전행정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추진!

취득세 과세대상, '요트회원권' 추가 ... 한센인·사회적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속 지원



지난 7월 26일, 안전행정부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그간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한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2012년 지자체 촉탁등기 수수료 3.7억 원)를 면제했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상당수 개선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했다.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트장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11년 기준, 요트 51대, 회원권 1,020구좌)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의 내용과 성격이 비슷함에도 요트회원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또,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매매대금일로 취득시기가 소급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우려(대법원판례 2012두 19229)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2013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지방재정 여건, 서민·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먼저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취득·등록·재산세 75%→50%)을 축소한다.

한편,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등은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은 유지토록 했다. ◆ <편집부>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8.2.부터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시작… 최초 1회만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신청서 제출

지난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1914년부터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한 제도다.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건의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인터넷(민원24 · 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라)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현재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분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며, 앞으로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편집부>



이제는 ‘전입신고’도 ‘스마트폰’에서!

‘민원24’에서 전입신고 및 출입국사실증명·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소득금액증명 등 서비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에서는 지난 5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신청 등 20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7월 25일부터 전입신고 및 출입국사실증명·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해 총 34종의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

▶ 모바일 민원서비스 내용

테마별 분류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8종)	전입신고,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부동산·자동차(6종)	지적(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
세금(3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등
여권·병역·장애(4종)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 장애인증명 등
대학·취업(9종)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등

국가인권위원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신분증명서, '일반·상세 2종'으로 구분·발급해야

오영나 전여법 부회장, "일부사항증명서, '일반증명서'로 개칭해 활용도 높여야" 지정토론



지난 8월 21일(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그리고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친생모에 대한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는 것을 꺼리는 미혼모 등의 베이비박스 유아 유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져,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분증명서의 기록과 공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향'과 출생신고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관해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상용 교수는 현행법에 따른 증명서의 존속을 전제로 하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2종으로 나누어 발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

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상태만이 나타나도록 하고, 과거의 변동사항은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명칭을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변경하여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처럼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도록 하고, 일반증명서에는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표시되도록 하되,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자녀(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발급받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출생신고와 관련해 "프랑스와 같이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생모가 가명을 쓸 수 있으며, 친생모의 신상정보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해 국가기관에서 보관, 자녀가 15세가 되었을 때 친생모의 동의에 따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나 전여법 부회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일부사항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개칭해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출생신고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에서 친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의 공시를 제한하고, 친부모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인적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둘러싼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9일, 전국여성법무사회를 비롯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 <편집부>

용어로 보는 ‘입법 이슈’



■ 잊혀질 권리 [정보통신 분야]

정보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해 개인들은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종전보다 많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본인이 과거에 자발적으로 올렸거나 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고 있던 인터넷상의 기록들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God forgives and forgets but the Web never does!).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근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le droit à l'oubli)다. ‘잊혀질 권리’는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안)」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점이 주목된다.

‘잊혀질 권리’의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배포의 금지’다. 동 규칙 안은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①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된 목적과 관련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주체가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동의한 저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정보처리의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④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칙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또,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첫째, 다른 기본적 권리 및 자유(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잊혀질 권리’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셜 미디어 또는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어느 특정 개인의 정보만을 적출하여 삭제 또는 배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라는 점, 셋째, 국외 또는 역외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 한계로서 지적된다.

■ 빅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기존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현대 지식사회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보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빅데이터(Big Data)’라는 주제가 대두되었다.

정보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세계, 글로벌 경쟁의 격

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재편 등의 상황으로 인해 빅데이터는 새로운 수단이자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미국 국제청의 탈세 방지, 일본의 지능형 교통안내,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예보 등 사회수준의 시스템과 Volvo, Amazon, Target, Hertz 등의 기업차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2년에 비해 5년 후에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10배가 될 것이라는 시장조사업체 위키본(Wikibon)의 예측이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엄청난 데이터 양, 비정형성과 다양성, 빠른 활용 속도에 있으며, 따라서 그 관련 기술도 대용량의 저장과 빠른 처리,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의 선별과 추출, 의미적 분석 기술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선도하는 MapReduce 기술을 탑재한 Hadoop은 빅데이터 처리의 기술수준을 일신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초 기술 외에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대두되어 새로운 인력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보의 공공화와 표준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이 예외 없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식사회의 흐름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정부, 민간, 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 수집하여 공공화 할 수 있는 저장소와 공개방식, 활용도 제고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경제 분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게 되자 추가적 세수확보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국정 과제화 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기회복의 지연은 추가적 세수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의 대선공약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약 1조 6,000억 원의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9~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평균이 GDP의 약 26.3%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 기간 OECD국가의 지하경제 규모의 평균이 GDP대비 약 20.3%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Schneider, 2012).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 비중, 낮은 납세의식, 납세당국의 징수능력 부진, 금융정보의 연계성 부진, 금융자산 및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회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과세당국의 징수능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다양한 조치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치, 금융정보 및 업무의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폭력 및 매춘 등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대대적 규제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기점을 마련한 바, 우리나라도 온라인 불법도박, 사채양성화 등 불법활동의 영역에 대한 규제 등에서 과표양성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거래 및 경제활동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납세의식 제고와 납세협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외금융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역외탈세에 국제적 정보공유 트렌드에 발맞추어 정보공유의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파급효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직접 이용, 바람직해

부실등기 가능성, 법무사 등 자격사대리인의 단순 인증수단 전략 등 문제



박 노 천 ■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등기비용 절감차원에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도입하였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등기 신청시스템과 현재 금융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연계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법원 전자등기와 금융권 전자등기연계 프로그램의 구분

법무사가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 받아 등기신청 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두 시스템의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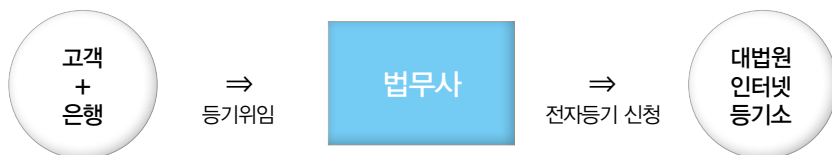
1) 대법원 전자등기신청시스템(아래 그림 참조)

가. 법무사가 고객 및 은행의 위임을 받아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를 수령한 후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메뉴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나. 이후 법무사로부터 위 내용을 통지 받은 고객과 은행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의 ‘전자서명자용 메뉴’에서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등기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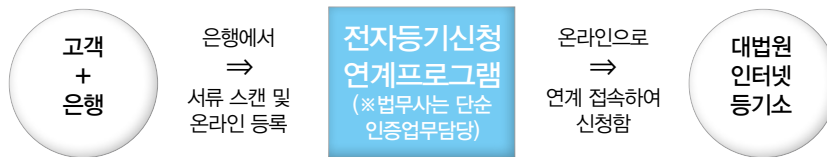
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법무사가 자신의 공인인증서

▶ 대법원 전자등기신청시스템



“금융기관이 전자신청방식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배제하고, 법무사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부실등기의 위험을 낮추고 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신청



로 전자인증을 한 후, 전자등기신청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출한다.

서명을 하고, 은행은 지배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다.

2)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신청

가. 전자등기신청을 목적으로 개발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과 은행의 내부전산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은행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물건지, 당사자, 채권최고액, 등기필정보, 신분증, 설정계약서 등)를 입력하거나 문서를 스캔하여 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 업로드 한다.

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접속한 법무사가 은행에서 입력한 정보를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등기신청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전자등기신청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다. 이 절차를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은행에 전자서명 승인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등기의무자인 고객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라. 은행과 고객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법무사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뒤 등기신청사건을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접수하며, 은행은 연계프로그램으로 접수를 확인한 후 대출금 지급절차에 착수한다.

3.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파급효과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단순 인증수단 전략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련의 과정 내에서 법무사를 비롯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등기신청대리 자격자로서의 전자적인 인증이 유일하다. 현재는 「법무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있지만, 은행과 고객 본인에 의한 직접 등기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향후 자격자대리인이 불필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액제 보수 등 법무사 보수의 삭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연계프로그램 내에서 법무사는 자격증을 빌미로 수수료를 챙기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이 금융기관이 위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저가의 정액제 보수를 주장하는 숨겨진 근거이며, 향후 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자 대리인을 배제하고 당사자에 의한 직접전자등기신청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반대할 근거가 취약해질 것이다.

3) 당사자 본인확인 및 리스크 증가의 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 내에서는 직접 대면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무사법」 제25조에 명기된 위임인 본인확인 이행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에 의해 전자서명만으로 본인확인이 충분하다는 견해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무사의 역할이 제한적임으로 부실등기 가능성이 높아짐에 반해 법무사가 부당할 과실책임에 대한 경감 등의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4) 법무사간 형평성의 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이 확대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은행들이 도입하였던 '대출실행센터'와 같은 전자등기신청 집중관리체제를 운영하여 소수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에게 위 업무를 독점토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서 관리 및 보안문제, 그리고 저가로 등기신청을 대리할 자격자 대리인의 수익보장을 위해 소수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은행거래 법무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사건만을 담당하거나 수익감소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권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등기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절차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융권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은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에 연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공적인 네트워크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지향하며 오랜 기간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으며, '첨부서면 스캔 제출 가능한 금융기관'이 등기관리자인 경우 위임인 중 일반인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전자인증 없이 등기위임장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기절차 상으로도 간편하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이 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드시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이를 이용해야 하고,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입을 봉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전자신청방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배제하고, 법무사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등기관 관련 서류를 수령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부실등기의 위험을 낮추고 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 본 글은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에서도 주제발표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

「전자서명법」 개정 통해 정당한 보수 받아야, '보수협약' 준수토록 협회의 감사·감독 강화해야



지난 8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가 최근 불거진 은행권 전자등기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전자등기 문제는 지난 2011년 7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각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법무사 수수료 인화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대응해 각 은행들과 보수협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법무사 보수의 75% 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은행들이 기업 등에서 개발한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저가의 정액제 보수로 대형 법무법인들과 계약을 하면서, 현재 은행권 전자등기시장이 일부 대형 법무법인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면서 세 가지 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로는 구태언 변호사의 “전자등기에 있어서의 거래 안전”, 제2주제로 박노천 법무사의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 제3주제로 김우중 법무사의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 방안”이 각각 토론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부여된 본인확인 의무를 「전자서명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자등기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면서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로서 부실등기 방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걸맞는 합당한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일부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제2주제 발표에서 박노천 법무사는 “현행 대법원 전자등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전자등기가 가능하므로, 은행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은행권 전자등기 시장에서 법무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제3주제 발표에서 김우중 법무사는 은행권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①저가의 정액보수라 하더라도 일단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어 차차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저가의 정액제 보수가 아닌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며, 각 견해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가 은행권과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등기보수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전 협회와의 보수협약을 준수토록 협회가 적극적인 감시·감독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더불어 현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법무사들은 “현재의 문제는 이론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색을 계속 해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편집부>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상속분 양도의 함정, 돌다리도 두드려라!

제2차, 3차의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1회의 직접등기 안 돼, 순차적으로 등기해야

통신원 사토 마키(佐藤 麻妃) ■ 사법서사(시즈오카현사법서사회)


이번 호에서는 총 상속인이 25명인 복잡한 부동산등기사건을 늘 하던 관례대로, 모든 상속인이 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양도하고 한 번의 등기로 명의변경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려다 낭패를 당한 수임기를 소개한다. 상속분의 양도 이전에 공동상속인에 대해 제2차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실수다. 일본의 경우이긴 하지만, 복잡한 상속등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소는 주변에 항구가 있고, 주위가 전원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다. 보통 시즈오카를 방문할 때는 신칸센(도쿄-후쿠오카 고속열차)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 사무소는 그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에서 10km 거리에 있다. 그래서 지나가다 들르는 고객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이 더 많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도 소문을 듣고 온 한 고객(이하 ‘갑’)의 사례이다. 갑 씨가 찾아온 것은 상속상담 때문이었다. 갑 씨가 아는 분이 이전 우리 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어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갑 씨의 사건은 꽤 골치 아픈 것이었다.

2. 사건의 개요

갑 씨의 집은 1959년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해 해체하고 다른 위치에 자택을 신축 할 예정이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사람이 갑 씨의 토지를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이웃에게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땅은 갑 씨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했다.

갑 씨의 할아버지는 1969년 4월 9일에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은 철거 예정인 주택 1동과 택지 1필지였다. 갑 씨도 상속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이전에도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상속인 수가 너무 많아 잘 안 됐어요.”

그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관계로 상속인이 줄줄이 늘어나 버린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기 때문에 필자는 갑 씨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전에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약간은 불안해졌다.

어떻든 먼저 상속인을 찾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서둘러 갑 씨가 파악하고 있는 상속관계를 들었는데, 피상속인의 부인은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식 11명 중 사망한 사람이 9명, 그 9명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갑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16명이었다.

갑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로, 그 밖의 상속인은 호적으로 찾아야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40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고, 그 후 사망한 상속인이 다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명된 상속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상속인의 수는 총 25명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그 중 갑 씨도 해당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8명, 미성년자도 2명 있었다. 게다가 갑 씨의 말로는 상속인 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비로소 이것이 이전의 상속등기가 실패로 끝난 사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곧 상속관계 설명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속관계가 너무 복잡해 사무소의 부동산등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종이에 가위로 그림을 잘라 붙이는 등의 수작업을 통해 간신히 완성할 수 있었다.

3. 유산분할 협의와 상속분의 양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 2명의 경우는 이런 번잡한 일을 극력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이 갑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유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고 한 번의 등기로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갑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충에 따

른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밟지 않고도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보니 큰 실수였다.

필자는 갑에게 속히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상속 등기절차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좀처럼 응답이 없었다.

결국 3~4번 편지를 보내자 간신히 협력하겠다는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불신에 가득 차 있어 대화가 어려웠지만, 필자가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을 하자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상속인에게에는 사전에 갑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밖의 상속인에게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마침내 몇 달 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갑에게 상속 재산을 양도하는 취지의 상속분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우송하고, 전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양도증명서를 받았다.

이제 이것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류를 마무리 짓던 필자는 문득 뭔가 뒤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느 연수에서 유사한 상속사건을 처리한 한 사법서사의 발표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그 사법서사는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을 상속분의 증여로 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필자는 책을 펼쳐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A → B의 상속 후 B → C의 상속이 발생하면, A → C에게 직접 등기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그러나 직접 등기가 인정되는 것은 단독상속이 연속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화 30년 12월 16일 民甲 2670호 民事局長通達).

이 등기가 인정되는 이유는 호적관계의 공적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등기가 발생할 위험



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공동상속 후 상속분의 양도 등에 의해 유산이 단독소유가 된 경우에도 단독상속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 직접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1984.10.15. 민3 5195호 민3課長回答).

즉, 공동상속인 ABCDE (법정상속분 각 5분의1) 중 BCD가 그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A 지분 5분의4, E지분 5분의1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이번 사건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1984년의 선례였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이 선례 앞의 선례를 보면, 상속분의 양도 이전에 공동상속인에 대해 제2차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1992.3.18. 민3 1404호 민3課長回答).

즉, 1992년의 선례에 따라 1984년의 선례는 상속분의 양도가 동일한 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경우에 한한다 생각되고, 수차상속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BCD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A의 상속개시 후에 C가 사망하고, D와 C의 상속인 F가 그 상속분을 B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B 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①A → BCD의 상속등기, ②C → F의 상속등기, ③D → B의 이전등기, ④F → B의 이전등기라고 하는 순서로 등기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1992년의 선례를 발견하고는, 연수의 사례 발표에서 그 사법서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낙담을 했다. 아마도 수험공부를 할 때였다면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선례였는데 안타깝게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4. 상속등기, 뜻밖의 함정에 유의해야

필자가 1992년의 선례를 잊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도중에 여러 번 상속이 발생하는 상속안전에 대해 모든 상속인의 유산분할 협의를 정리하여 한 번의 등기로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등기 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는 물건변동 과정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가운데, 공동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유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때, 피상속인 명에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기 때문(민법 909조)이라는 의미로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상속분의 양도에는 소급효가 없는 이상 유산분할 협의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1984년의 선례가 상속분 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등기를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경우였기 때문이고, 권리이전의 사실이 확실하여 부실등기가 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단독상속과 동일시 한 것으로 이것 또한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갑 씨의 사건은 제2차, 제3차의 공동상속이 발생한 이상 1회의 등기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결과, 상속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속분의 증여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여 갑 씨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으로 했다. 세어 보니 총 26 건의 등기신청이 필요했고, 또한 각 상속인에게 위임장도 받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다.

상속등기는 사법서사나 법무사에게 가장 주된 등기로써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일견 단순한 것처럼 보더라도 이처럼 심오한 뜻밖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6년

大韓法務士協會

법령·판례 예규·선례

개정 법령·규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045호, 2013.8.13.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949호, 2013.7.30.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하고 입양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7.30.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7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 제117조(제14조 제7항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 재판 등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령·판례 예규·선례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 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생·혼인 등의 신고 시 무능력자의 명확화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마.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79조 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사.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 신설)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경질·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아.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재판 등을 위한 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96조 제6항, 제99조 제4항, 제101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및 제105조 제2항 신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8.12.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령·판례 예규·선례

▶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되어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재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새로 도입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위 「신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이 2013.5.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탁법」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39조 제2항)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9조의2 신설).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시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9조의3 신설).
-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등기실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0조의2, 제140조의3 신설).
- 담보권신탁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4조의2 신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2호, 2013.4.5. 공포, 2013.7.1. 시행)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69호, 2013.6.5. 공포, 2013.7.1. 시행)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7종)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청구권자,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방법을 규정함(제8조,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
-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제10조).
-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 주민등록번호등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하여 발급함(제13조).

대법원 등기예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97호 / 2013.6.7.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98호 / 2013.6.1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등기명의인인 개인까지 확대하기 위함임.

법령·판례 예규·선례

2. 주요내용

- 등기명의인이 개인일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제10조 제2항 후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00호 / 2013.7.2.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촉탁정보와 그 등기의 실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촉탁정보를 규정함(제3조 제1항)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의 실행방법을 규정함(제5조 제2항)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01호 / 2013.8.23. 결재

(본문 생략)

부칙

1. 이 예규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등기예규 제1472호)은 이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1)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2013.5.28. 및 2013.8.12. 각 일부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의 시행에 맞춰 임시로 제정된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72호)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73호)에 통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1) 개정 「신탁법」에 새로 도입된 유형의 신탁(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재신탁, 담보권신탁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등기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2)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

부동산등기 선례(2013.6.)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2013.6.7. 부동산등기과 - 1342 질의회답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근저당권자(채권자)와 맺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는 채무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

법령·판례 예규·선례

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1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 제445항, VIII 제14항

중중원 명의의 농지에 대하여 중중이 그 중중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다른 중중원 명의의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3.6.7. 부동산등기과 - 1335 질의회답

중중이 중중원 갑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중중 명의로의 이전등기 없이 다른 중중원을 앞으로 명의수탁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농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변경을 결의한 중중결의서와 중중이 갑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32항, 제313항, VI 제475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를 하는 방법

2013.6.11. 부동산등기과 - 1372 질의회답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구분등기)를 한 다음,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때 일반건물 전체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는 위 구분등기의 실행에 의하여 각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 이기(전사)되며, 이러한 등기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해지 등을 원인으로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등기권리자가 말소판결을 얻어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II 제507항

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2013.6.28. 부동산등기과 - 1517 질의회답

□□시 ◇◇구 △△동 307-2(50,000㎡)가 307-2(45,000㎡), 307-4(5,000㎡)로 분할된 후 307-4(5,000㎡)는 다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분필등

법령·판례 예규·선례

기 전 307-2(50,000㎡)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분필등기가 누락된 307-4(3,000㎡), 307-5(1,500㎡), 307-6(500㎡)의 환지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폐쇄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사업시행자는 분필 전 307-2(50,000㎡)의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 인가서 등본, 환지확정조서 등)를 첨부하여 그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한 후, 부활된 307-2(50,000㎡)에서 307-2(45,000㎡), 307-4(5,000㎡)로의 분필등기, 307-4(5,000㎡)에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의 분필등기를 순차로 한 다음에, 분필등기 후 307-2(45,000㎡)와 307-4(3,000㎡), 307-5(1,500㎡), 307-6(500㎡)에 대한 환지등기를 신청(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2조, 농어촌정비법 제2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7호, 제1430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집집 V 제603항, 제706항

분양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와 등기관 심사범위

2013.6.28. 부동산등기과 - 1531 질의회답

1.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병이 다시 그 분양권을 정에게 전매한 경우에,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위 각 서면의 작성명의인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 다만, 분양권을 최종 양수한 정이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등기예규 제1419호 2.) 제출된 원

인서면 중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가 첨부되고 중간 전매계약서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갑과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참조) 등기관은 다른 각 하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13조, 인지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법인등기 선례(2013.3. ~ 6.)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2013.3.20. 사법등기심의관 - 975 질의회답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2013.4.17. 사법등기심의관 - 1388 질의회답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

법령·판례 예규·선례

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2항, 제419조 제1항·제2항·제3항, 상법등기법 제79조 제1항·제2항, 제82조

- 참조선례 : 상법등기선례 1-207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3.5.14. 사법등기심의회관 - 1781 질의회답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549조, 상법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81조, 제109조, 상법등기규칙 제5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선고 2007마1154 결정

- 참조선례 : 상법등기선례 1-140, 상법등기선례 1-143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2013.5.14. 사법등기심의회관 - 1782 질의회답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제1항·제2항, 제66조의

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9조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2013.6.24. 사법등기심의회관 - 2252 질의회답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65조 제1항·제3항, 제461조의2 상법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 참조선례 : 상법등기선례 200906-2

월간『法務士』 지난호 보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 자료실 ⇒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생활법률상담

Q & A

가사·민사분야

가사

Q. 10년 전 이혼한 남동생이 사망했는데 미성년자 조카를 대리해 상속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남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은 10년 전 이혼을 하고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당시 5살이었던 조카는 바쁜 남동생을 대신해 고모인 제가 키워왔습니다. 조카의 친모는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한 번도 딸을 보러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남동생 명의로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이 있어 조카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친모 대신 고모인 제가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A.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 후, 후견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 일방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친권 자동부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909조의 2에 의하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청구나 후견인 선임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 자녀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친권자인 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고모인 귀하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

Q. 대부업체가 연대보증계약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경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해와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를 못하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자필로 작성, 서명을 날인하여 보내달라는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친구가 주채무자로 6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연대보증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친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부업체에서 제게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전화 및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이 없으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은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고 음성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25714)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이 아닌 음성녹취에 의한 연대보증의사에 대한 동의는 보증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대보증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서면 통지하시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생활법률상담

Q & A

민사집행 · 민사분야

민사집행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지만, 대상물 일부의 제3자 점유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화해 원예업을 하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명도집행 시 집행관이 대상물 일부를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며 집행을 중지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신청하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제3자는 채무자의 친인척인데도 말입니다.

A.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부분 도면을 첨부,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재신청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귀하께서 그나마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셨기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승계주의에 따라 변론종결 전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전에 일 부라도 점유가 이전된 경우 새로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가 가처분권자인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9.3.23.선고 98다59118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처분채무자가 목적물 일부를 이전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로서는 특정 점유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애초에 받은 집행문에 더하여 재차 집행을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처럼 점유승계인이 채무자의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점유의 선·악의를 불문하는 실무례에 비추어 볼 때 집행관 입장에서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제3자를 단순 점유보조자로 보고 승계집행문 없이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집행관 작성의 가처분집행조서와 집행불능조서(현재의 점유자와 점유상태)를 첨부하면 됩니다. ◆



민사

Q. 매수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지만, 더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매수키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개인사정상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중개인으로 부터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의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A.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시 수수되는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성립 증거로서의 '증약금'의 의미 외에도 해제권 유보시키는 대가로서의 해약금, 일방의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위약금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해약금에 대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민법 제565조).

그리고 일방이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위약금 특약 여부에 따라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 위와 같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게 되는 것이지 계약금이나 그 배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됨으로 당연히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제를 위해서는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마저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아래의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 관한 것으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매도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91.5.28. 91다9251)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위 사안에서도 나머지 계약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없었을지라도 현실지급과 동일하게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구속력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좌회전·뉴턴 시 황색실선 넘어도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 앞지르기 속도경쟁 금지 위반시, 2~5만 원 범칙금 부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규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일반적인 주행방법

「도로교통법」은 통행의 일반기준으로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이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10점의 벌점도 받게 된다.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가 통용된다. 우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가 인정된다. 도로가 파손됐거나 도로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도로의 우측부분 폭이 6m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앞차를 앞지를 경우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또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좁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측통행

을 할 경우에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벌점은 30점이다. 다만, 판례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시도하다가 황색실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0도2116)

앞지르기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앞지르기도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 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즉, 양쪽에서 앞지르기를 하던 차량이 충돌할 경우 쌍방 책임일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우측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다.

앞지르기가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앞지르기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3만 원,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

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한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보운전 의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 할 의무가 있다.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다른 차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차로를 주행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도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도로, 1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는 4차로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의 주행도로가 되고, 나머지는 3차선 도로와 같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차량이 고장난 경우, 교통이 밀리는 경우 등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도 무방하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한다. 고속도로를 진입할 경우에는 먼저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만, 앰블런스 등 긴급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항상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빈발하는 사고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차자들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경우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를 관리할 때도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창유리 섀팅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차량이 아닌 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위반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와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장착한 경광등과 사이렌, 비상등은 설치해서도 안 된다. 위반할 경우 2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특히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임 순 현 ■ 『법률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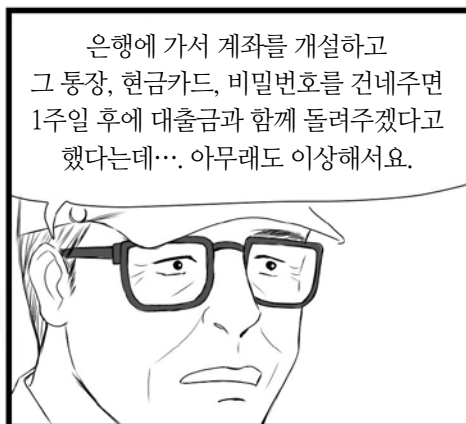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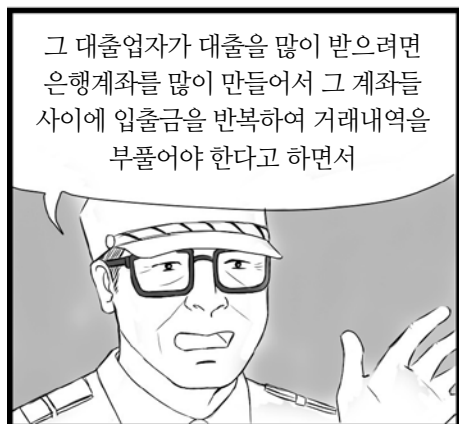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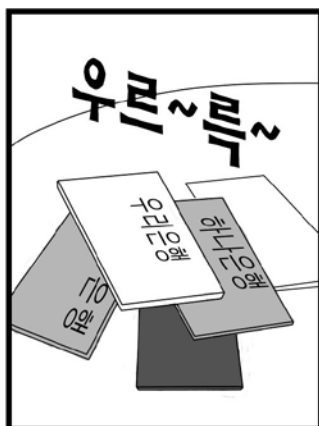
강박

법무사사무소



제8화 대포통장

<글·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통장을 그런 사람들에게
막 줘도 되는 건가요?



안되지요~~~!!!



그런 것들이 다 대포통장이 돼서 범죄에
사용되는 거예요. 본의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이에요!!



엥!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내가 통장을
뺏어오길 잘했군...
큰일날 뻔 했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고발하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나쁜 사람들!!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어쨌든 내가 물어보러
올라오길 잘했네...
고마워요~고마워!



법무사 사무소가 가까이 있으니깐
넘 좋으네... 회장님이 자꾸 보고
하라고 해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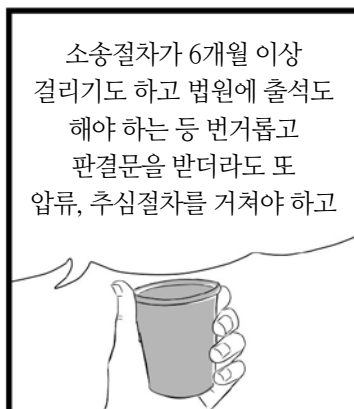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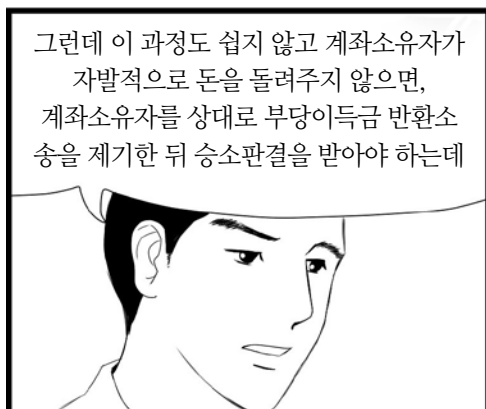
넵?
누가요?
회장님??

아니, 아니!!! 이런~ 내가
무슨 말을~~ 신경쓰지 마요~!!
그럼, 난 내려가요~!!



쌔~~엥~~

엥?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송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조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2개월 공고



의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이네요!!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환금은
피해금 보상이 아니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죠.



결국 보이스피싱 등
사기 안 당하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네요.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기 마련이니깐
일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보고
조심하자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래..!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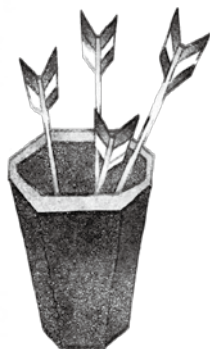


운주유막

(運籌帷幄)



진영환 ■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운주유막(運籌帷幄)”이란 “군대(軍隊)의 막사(幕舍) 안에서 전략(戰略)을 세운다”는 뜻으로, 중국의 한왕(漢王) 유방(劉邦)이 B.C. 202년에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우(項羽)를 깨뜨리고 황제(皇帝)로 즉위한 뒤에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서 신하들에게 주연(酒宴)을 베풀 때 천하를 차지하게 된 연유를 밝히면서, “무릇 군대의 막사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하는 일은 내가 자방(子房)만 못하오.”¹⁾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기』 「유후세가(留侯世家)」 등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²⁾

장량(張良)의 치열(熾烈)한 복수심(復讐心)

유후(留侯) 장량(張良 : ? ~B.C.189)은 자(字)가 자방(子房)으로 그의 조상이 한(韓)나라 사람이다. 조부(祖父) 희개지(姬開地)와 아버지 희평(姬平)이 무려 5대(代)에 걸쳐 한(韓)나라의 상국(相國)을 지냈다.³⁾ 진(秦)나라가 B.C. 230년에 戰國七雄中 제일 먼저 한(韓)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에 장량은 나이가 어려서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그의 집에는 노복(奴僕)이 삼백 명이나 되었는데, 동생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모든 가산(家産)을 다 털어 진시황(秦始皇)을 죽일 자객을 구해서 한(韓)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장량은 일찍이 동쪽으로 가서 창해군(倉海君)을 만나 뵈고, 역사(力士)를 얻은 뒤에 무게가 120근(斤)이나 되는 큰 철추(鐵椎)를 만들어 B.C. 218년 진시황이 동방을 순수(巡狩)할 때, 역사(力士)로 하여금 박랑사(博浪沙 : 현재 하남성 原陽縣 부근)에서 진시황을 공격하였으나 잘못하여 부거(副車 : 시종이 타는 수레)를 맞히고 말았다.

진시황은 크게 놀라서 천하를 모두 살살이 뒤져 급히 자객들을 붙잡자, 장량은 성(“姬”를 “張”으로 바꿈)과 이름을 바꾸고 하비(下邳)로 달아나 숨어 살면서 황석공(黃石公)으로부터 「태공병법(太公兵法)」을 받아 열심히 익히고 외워 마침내 왕자(王者)의 스승이 되는 길을 터득(擣得)하였다.

장량의 헌책(獻策)과 유방(劉邦)의 청종(聽從)

십년이 지나 진승(陳勝) 등이 병사를 일으켜 진(秦)나라에 모반하자, B.C. 208년 장량도 젊은이 100여 명을 모아

1) 「夫運籌策帷幄之中，決勝於千里之外，吾不如子房。」

2) 김원중 옮김 「사기 세가」 p. 825~853, 노만수 옮김 「사기 영선」 p. 79~102, 신동준 편역 「실록 초한지」 p. 49~358

3) “韓人張良，父祖以上，五世相韓。韓亡，良，欲爲韓報仇。”

유현(留縣)에서 패공(沛公) 유방(劉邦)을 만났고, 패공은 장량을 구장(庖將 : 말을 담당하는 책임자)으로 임명했다. 장량이 자주 「태공병법」을 패공에게 설명(說明)하자 패공이 좋게 여겨 항상 그의 계책을 채용했다. 장량이 전에 다른 사람에게 「태공병법」을 말했을 때는 아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한 반면, 유방이 자신의 계책을 좇는 것을 보고는 크게 탄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패공은 대략 천수(天授 : 하늘이 세상에 내려 준 인물)에 해당한다.”

B.C. 207년에 초(楚) 회왕(懷王)의 명으로 패공이 진(秦)나라를 치기 위해서 참모인 장량과 함께 낙양(洛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완현(宛縣)을 공략하고 서쪽으로 무관(武關 : 현재의 섬서성 丹鳳縣 동남쪽)에 들어갔다. 이때 패공이 병사 2만 명으로 진(秦)나라의 요관(峽關)을 지키는 군대를 치려고 하자 장량이 설득하여 말했다.

“진나라 군대는 여전히 강성하여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의 장수는 백정(白丁 : 도축업자)의 자식이라고 하니, 장사꾼은 돈이나 재물로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패공께서는 잠시 성벽에 머물러 계시고, 사람을 보내 먼저 가서 5만 명의 식량을 준비하고, 다시 모든 산 위에 많은 깃발을 세워 의병(疑兵 : 군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 삼게 하시고, 세객(說客) 역이기(酈食其)와 육가(陸賈)에게 많은 보물을 주어 진나라 장수를 매수(賈收)하십시오.”

진나라 장수가 매수되어 진나라를 배반하고 패공과 화친을 하고자 하거늘 패공이 기쁜 나머지 얼른 함양으로 진격하자고 재촉했을 때 장량이 반대했다.

“이는 단지 그 진나라 장수가 배반한 것일 뿐이지, 병졸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하게 되니, 그들의 군기(軍氣)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공이 이에 군사를 이끌고 요관을 우회해 괴산을 넘어간 뒤 방심하고 있던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그들을 쫓아 북쪽으로 남전(藍田)에 이르러 다시 싸우니 진나라 군대는 결국 대패하고 말았다.

B.C. 206년에 드디어 진(秦) 나라 수도인 함양(咸陽)에 이르니 진나라 3세 왕 자영(子嬰)이 패공에게 항복했다. 패공은 진나라 궁으로 들어가자 궁실 휘장이나 개와 말, 보물, 여자 등이 수천을 헤아릴 정도로 많아 마음속으로 그곳에 살고 싶어 했다.

번래(樊噲 : ?~ B.C. 189)가 패공에게 궁 밖으로 나가 살도록 간언하였으나 패공이 듣지 않자, 장량이 말했다.

“진(秦)나라가 무도한 탓에 패공께서 여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릇 천하를 위하여 남아 있는 적을 없애려면 마땅히 검소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비로소 진나라에 들어왔다고 그 즐거움을 편안하게 누리기만 한다면, 이는 이른바 ‘하(夏)나라의 폭군 걸(桀)왕이 포악한 짓을 하도록 돕는 것’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실천하면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데 이롭다’⁵⁾고 하였습니다. 패공께서 번래의 말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패공은 이에 패상(霸上 : 섬서성 서안시 동남쪽)으로 군대를 돌렸다.

그 후에도 장량은 여러 가지 계책으로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재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워 유후(留侯)에 봉해졌으나, 부귀영화를 하찮게 여겨 끝까지 명철보신(明哲保身)을 하였으니 참으로 현명(賢明)했던 사람이 아닌지요? ◆

4) “助桀爲虐”

5) “忠言逆耳利於行，毒藥苦口利於病.”

“나랏말싸미”의 혁명

-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



임 익 문 ■ 법무사(전라북도회)



‘일본인 언어학자’가 추
적한 한글 탄생의 비밀

책의 제목이 ‘한글의 탄생’인데 글쓴이는 일본인 ‘노마 히데키’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안개눈썹

을 비비며 자발없이 책장을 넘겨댔다. 그러자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가 해풍에 조금씩 걷히듯 희미한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던 ‘나랏말싸미’가 또렷하게 형체를 드러냈다.

이 책의 저자 노마 히데키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가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탄생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도쿄교육대학교 예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술작가의 길을 걸었다. 현대미술계에서 개인전을 여덟 번이나 열 정도로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열성적으로 활동한다.

1979년 그는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된 젊은 미술가들의 「7인의 작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전람회에 참가한다.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한국어와 한글에 매력을 느껴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1983년 나이 서른에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한다. 이후 한국어학 탐구에 정열적으로 매진하여 당시 언어학의 거성인 고노 로쿠로 - 간노 히로오미의 학통을 잇는 언어학과 한국어학에 정통한 학자가 된다.

2010년 『한글의 탄생』으로 마이니치 신문사와 아시아 조사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상 대상을 수상한다. 이것이야말로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비약적인 知의 변혁”이라고 해야 할까, 혁명이라고 해야 할까.

이 책은 언어학자이자 한국어학자의 시점에서 한글의 탄생과 역사, 구조와 원리, 더 나아가서는 한글이 지닌 훌륭함과 보편으로 나아가는 훈민정음의 기적에 대하여 유려한 문체로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학에 대한 전문서적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책으로 음운학에 대한 지식이나 인문학적 토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문외한인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을 정도로 문체가 독특하고 유려하다. 이 책의 미덕 중 하나다.

여기서 책의 내용에 대해 전부 소개할 수는 없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내용이 풍부해서 한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말해진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자라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한 ‘쓰여진 언어’가 되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의 구조를 통해 ‘음이 문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반부에서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지, 훈민정음이 탄생하기 전까지 한국어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한국어 모어화자는 어떤 문자생활을 했는지, 정음의 제자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백미는 역시 저자가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이라 명명한 ‘한글의 탄생’에 대한 기술이다.

정음이 만들어질 당시 한반도에서 모든 ‘쓰여진 언어’(저자는 이를 ‘에크리튀르 écriture’라는 전문용어로 이름하였다)는 한자와 한문이었다. 그 당시 “지식인들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는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을 선언한다.
 이에 한자한문세계를 대표하는 부제학 최만리는 한자가 잊혀지면 ‘知’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혁명을 반대한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두 천재의 대결은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혁명파가 승리한다.

에게 한자 한문은 삶이었으며 죽음이었다.” ‘한자한문 에크리튀르’가 세계의 전부인 상황에서 세종은 어린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 것을 결심한다.

한글 창제를 둘러싼 두 천재의 ‘知’의 투쟁

저자는 이것을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이라고 명명한다.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총사령부로 삼아 선두에 서서 ‘정음’ 창제를 진두지휘한다. 세종 자신이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것이다. 집현전은 조선왕조 최고의 두뇌집단으로 정음 창제 혁명의 중추였으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정2품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였다.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 후서에서 말한다.

“계해년(세종 25년 1443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개략 그 예와 뜻을 들어 이를 보여주시었다.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다. 형태를 본뜨되 글자는 고전을 본떴다. 소리에 따랐기에 음은 칠조에 맞는다. 삼극(三極)의 의(義), 이기(二氣)의 묘(妙),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뒤이어 거말뭇을 박듯 다음과 같이 메조지한다.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써서 나타낼 수 있다.”

의성의태어, 이른바 모든 ‘오노마토펜’을 훈민정음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지의 혼신을 다한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선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지식인의 전부라 해도 무방한, 한자한문세계를 대표하는 정3품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는 ‘정음’이 지향하는 용음합자(用音合字)사상(훈민정음의 기본원리인 ‘글자는 반드시 합쳐져서 음을 이룬다’

는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지만,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정음’ 혁명에 반대한다. 조선이 문자를 모르던 태곳적이라면 몰라도 우리 조선에게는 참된 문자가 있다고 외친다. ‘정음’밖에 알지 못하고 관직에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한자가 잊혀질 것이고 ‘知’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절규한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두 천재의 대결은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혁명파가 승리한다. 저자는 “정음 에크리튀르 혁명파와 한자한문 원리주의의 투쟁은 정치권력 투쟁의 ‘이데올로기적인 외피’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知’를 둘러싼 투쟁이었다”고 갈파하고 있다.

‘정음’의 창제와 반포로서 혁명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다. ‘정음’은 문자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텍스트로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산군의 정음 반혁명 시련을 이겨냈다. ‘정음’은 점차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장했고, 이제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보편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학창시절 「세종어제훈민정음」 서문을 패러디하여 전설처럼 내려오던 주문(呪文)같은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훈민정주 訓民正酒”였다. 우리는 막걸리를 앞에 놓고 마시기 전에 공비임비 훈민정주를 낭송하며 풍류남아인척 호기를 부리곤 하였다.

나랏술이 중국에 달아 입맛이 서로 맞지 아니할새 이런 전초로 어린 백성이 술을 마시고자 하여도 모릅대 제 마음껏 마시지 못할 노미 하니라. 내 이 위하야 어엿비 너져 새로 막걸리라는 술을 땡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너져 날로 마심에 흥겹게 호고적홀 따름이니라. ◆

자클린 뒤 프레의 『엘가 첼로 협주곡』

자클린이 온다, 한 남자가 온다



하 철 우 ■ 법무사(대구경북회)



▲ 자클린 뒤 프레.
『엘가 첼로 협주곡』 앨범. ▶



희귀병으로 요절한 천재 첼리스트, 자클린

처음 그녀를 알게 된 것은 1987년 가을, 다니던 대학 앞 어느 미장원에서였다. 머리를 자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손에 잡힌 한 잡지의 사진 속에서 등 푸른 생선처럼 싱싱한 한 여성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1987년 10월 19일 마흔 둘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희대의 첼리스트 ‘자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é, 1945~1987). 다섯 살에 첼로를 시작하여 16세에 정식 데뷔, 그리고 마침내 찬사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불꽃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던 그녀.

그러나 25세에 찾아온 불치병으로 28세에 연주

자로서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다중경화증’이란 희귀병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결국 안면 마비로 눈물마저 흘릴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렀던 그녀.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처음 그 존재를 알게 된 그 날 이후 자클린 뒤 프레의 음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나에게 부활하였다. 많은 음반을 들었다. 특별히 『엘가 첼로 협주곡(El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은 강렬하게 각인되었는데 그녀가 빼어난 연주 기교를 펼치는 이 곡의 첼로 독주에서는 자클린의 목 메이는 울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오기까지 했다.

슬픔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그녀의 비장한 첼로 연주를 들을라치면 ‘눈물마저 흘릴 수 없게’ 되어 표정 없이 죽어갔을 그녀의 사진 속 미소 띤 얼굴이 너무도 투명하게 떠올라 입 속 어딘가를 콕 베어 문 것 같이 아프고, 아팠다.

기쁨과 행복이 미소로 번져 나올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탈출구로 분출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삶은 도대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느끼고 표현한다’와 동의어가 아니던가.

안면 마비로 표정을 잃어버린 때부터 이미 그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죽은 고기마냥 혈색을 잃고 썩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면 삶은 죽음과 다름없다.

그러나 자클린의 안면 마비증이 머지않아 나 자신에게도 다가올 증세란 사실을 그땐 미처 몰랐다.

눈물을 잃어버린 병, 내게도 찾아와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노래방에 갔을 때 더 이상 내가 부르는 노래들이 신곡 코너가 아닌 '가나다'순 어딘가를 뒤져보아야 발견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만은 아니다. 표정을 잃어버린 때, 그 때부터 우린 '철들었다'는 소릴 듣는다. 어른이니까 함부로 울어서도 안 되고, 어른이니까 해픈 웃음도 안 되고, 어른이니까 분노를 무시로 폭발해서도 안 되고….

느낀 대로 표현할 때 세상은, 특히나 권력은 불이익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존의 이익을 위한 가면 쓰기. 학교와 군대와 직장 그리고 이 세계는 고통이나 아픔에 반응하지 않으며, 기쁨이나 행복에도 초연한 척하고, 불의와 부정에는 눈을 내리감는 쪽을 선택하도록 나를 훈육시켰다.

타인의 욕망을 위해 나의 표정을 죽일 것. 비겁과 굴종으로 내 감정을 억압할 것. 이런 과정의 반복과 더불어 내 감정과 표정 위엔 무거운 돌덩어리들이 하나 둘 올려졌다. 표정을 잃어버리는 병은 자클린에게만 찾아온 불행이 아니었던 것이다.

안데르센의 동화 한 편을 애써 기억해 내려 한다. 한 소녀가 왕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왕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녀는 눈물을 마녀에게 내놓는다. 왕자와 소녀는 사랑하게 되나 왕자의 어머니가 아팠을 때, 소녀는 눈물을 흘리려 했으나 단지 속으로였을 뿐 팔아버린 눈물을 흘릴 수 없었고 예쁜 목소리로 웃어댈 뿐이었다. 왕자는 그 소녀를 떠난다.

난 무엇과 표정을 바꾼 것일까.

자클린 뒤 프레의 연주를 들으며 무표정하게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녀는 12년 간 음악가로 활동했으나 14년 동안은 침대와 휠체어 위에서 투병해야 했다. 마른 북어처럼

혹은 동태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안면 근육이 굳어버려 표정을 지을 수 없었고, 결국 호흡조차 못하게 되어 숨을 거두었다.

표정 없이 살기엔 삶이 너무 절박하다!

그녀가 침상에서 가슴을 치며 갈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찮은 농담에 깔깔대며 웃기, 이별의 아픔에 엉엉 울기,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악악 소리로 터뜨리기,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을 그윽한 미소로 전하는 일 따위가 아니었을까.

세상 만물이 모두 잠든 시각, 열대야를 견디지 못하고 홀로 깨어난다. 아내의 고운 숨소리와 딸아이의 뒤척임에 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영흐영 소리 내며 울었다.

꿈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한 남자가 운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냉정한 머리를 가진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가 되었다. 낙오하지 않기 위해 나는 늘 두리번거렸고 결국 내겐 왜소하고 불안한 표정만 남게 되었다.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실은 돈을 원했고, 그 대가로 '감정과 표현'이란 삶의 마법을 잃어버렸다.

존재가 끝나는 순간, 나의 우주도 함께 문을 닫을 것이다. 죽음은 생생한 육체의 기쁨, 절망, 슬픔, 환희의 감정에 막을 내리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는 순간엔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을 포효할 때이다. 그렇다면 표정을 잃어버린 나는 죽음을 미리 앞당기려 한 것이 아닌가.

올 가을엔 자클린 뒤 프레의 「엘가 첼로 협주곡」을 들으며 잃어버린 표정을 되찾아야겠다. 시대를 핑계 대며 표정 없이 생을 소모하기엔, 내 삶의 유통기한은 너무 짧다. ◆



봉준호 감독의 신작 「설국열차」

기차는 달린다. 나이갈 것인가, 전복할 것인가?



김 청 산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 연극배우



기상이변의 지구,
유일한 생존열차
속 계급투쟁

90여년간 외동
딸과 손자들에게
한없는 희생과 사
랑만을 베푸시다
가 요양병원 생활

을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으신 외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올라와, 연극 공연을 선정해서 보고 평을 쓸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던 엇그제, 역시 노모를 퇴원시키고 어렵게 시간을 낸 아내와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즈음에도 상영은 계속중일 거고, 하나의 현상(現象)이라 할 만한 문화적 논란의 이슈를 점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좋았어요!'나 주변 음식점 소개를 엮은 단순 블로그의 수준은 넘어서 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T.V. 프로그램 「출발, 비디오 여행」에 나오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통명스런 관객의 시점으로 "왜?"를 던져 보고자 한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쾅쾅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텅굴고 있는 앞쪽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크리스 에반스 분)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 권력자 월포드(에드 해리스 분)가 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하는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 그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도자료 인용>

처음과 끝이 연결된 '영정화'에 대한 경각

커티스를 비롯한 꼬리칸 승객(무임 승차자)들은 열차 속 서열화된 지배구조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고, 앞칸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서 철저히 소외당한다. 스테이크의 맛을 모르는 에드가(제이미 벨 분)나 아들을 빼앗기고 거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타냐(옥타비아 스펜서 분)와 앤드류(이완 브렘너 분). 이들에게는 앞칸을 차지해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명분이 있다. 꼬리칸의 은밀한 지도자 길리엄(존 허트 분)이 이들을 격려한다.

살벌한 폭력투쟁 끝에 꼬리칸의 바로 앞칸을 차지한 다음에는, 죄수로 갇혀있는 보안 전문가 남궁민수(송강호 분)와 그의 딸 요나(고아성 분)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들은 협력의 대가로 환각물질인 크로놀을 계속 요구한다.

“아마 부정적 평가를 내린 대부분의 관객이 이 작품을 아리송하다고 폄훼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물, 즉 ‘캐릭터와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최고의 무술가가 덩치 큰 악당에게 가볍게 제압당해 죽는가? 그 악당은 터미네이터처럼 서너 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나서, 힘없는 송강호의 몇 번의 펀치에 너무 쉽게 죽어 버린다.”



이들이 이 처참한 활극을 벌여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포드의 독재, 소수 상위계급의 횡포로부터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수하는 폭력과 우리 편 다수의 희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 가치가 있을까? 영화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생존율과 인공적인 열차의 생태계 속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순간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설계자의 방에 들어선 네오의 당혹과 절망, 분노가 겹쳐서 떠오른다.

독재자 월포드와 혁명가 길리엄의 연결·반복되며 계속되는 반란과 진압의 광경 속에서, 우리는 니체(F. Nietzsche)의 이른바 ‘영겁회귀(永劫回歸; Ewige Wiederkunft)’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반란은 좌절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까? 내가 믿은 정의가 순진무구하게 표상되고 실현되지 못함을 알았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한 반전은 민수와 요나가 선택하는 일탈에서 비롯되지만,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아니, 니체 본래의 화법으로 힘주어 말하자면, ‘이런 모든 현상이 영겁회귀될 것이다’는 결정론적 예언이 아니라, ‘영겁회귀되는 이 모든 순간, 초인으로서 거부하고 깨부쉘라’는, 운명애(Amor Fati)의 촉발을 요구하는 경구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커티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이다. 자기 운명의 끝을 안다고 해서, 지금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감독 혼자 쓴 시나리오의 한계, 빛나는 30명의 배우

봉준호 감독에 대한 필자의 애증도 일반 관객과 비슷하다. 「괴물」과 「살인의 추억」에서 보여준 그 디테일한 힘, 괴기스럽고 묘상하면서도 파안대소하게 만드는 묘한 말투와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능력, 실제 배우 및 스태프들 사이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멋지게 소통하며 지휘하는 능력.

하지만 「마더」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지나치게 거장 흥내를 내는 듯한 어깨에 힘주거나 중간의 재밌거리가 주제의식을 희석해 버리는 경우 등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최대 자본을 가지고 최고의 스케일을 구현하며, 동서양 최고의 배우 및 스태프와 함께 할리우드식 제작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이 작품에서는 어땠을까?

관객의 판단마다 다르겠지만, ‘일장일단(一長一短)’이었다. 거의 모든 배우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큼의 지휘력과 천재성, 기지 넘치는 화법과 대등한 자리에서의 의사소통 등에는 큰 점수를 줄 수 있겠다. 하지만 혼자 쓴 시나리오의 한계는 분명히 보인다.

아마 부정적 평가를 내린 대부분의 관객이 이 작품을 아리송하다고 폄훼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물, 즉 ‘캐릭터와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최고의 무술가가 덩치 큰 악당에게 가볍게 제압당해 죽는가? 그 악당은 터미네이터처럼 서너 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나서, 힘없는 송강호의 몇 번의 펀치에 너무 쉽게 죽어 버린다.

또, 엔진칸에서는 전투와 화재, 아우성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커티스와 월포드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을까? 폭탄은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맞춰서 터져준단 말인가.

특별히 부여한 캐릭터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송강호의 존재감은 약했다. 기본적으로 서양인의 호흡으로 바라본 동양인이라 그런 건지, 힘 빼고 상스럽게 말하는 것의 재미는 있었는지 몰라도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포인트를 주어 자신의 특별한 의도를 설명하지도, 미리 안내하지도 못했다. 이는 배우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나리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요나 역의 고아성. 미완(未完)의 대기(大器)가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보여주는 가능성. 그 역시 아직 미완이다. 화장으로 얼룩지지 않은 풋풋한 여인의 향기는 아직 만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고 전달력 있는 영어 대사의 구현은 큰 점수를 줄 만하다.

하지만, 기차에서 태어난 17세 소녀가 왜 술에 취해야 하는가. 결말을 좌우할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목표를 아با인 송강호와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디테일의 부족이다.

이 영화에서 단연코 빛나는 배우 세 명을 꼽으라면, 필자는 메이슨 역의 틸다 스윈튼과 길리엄 역의 존 허트, 그리고 윌포드 역의 에드 해리스를 꼽겠다.

물론 감초 역할을 멋지게 해준 옥타비아 스펜서나 이완 브렘너, 우리의 '빌리 엘리엇' 제이미 벨 등의 공헌도 역시 높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커티스 역할은 '캡틴 아메리카'인 크리스 에반스 말고 그 어떤 풋미남 배우가 맡아도 그만큼은 해낼 수 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졌고 풍부하게 앞뒤가 설명되고 관객이 이입해 주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17년 전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는 필자뿐 아니라 많은 관객이 실망했을 것이다. 기대의 역전이다. 윌포드의 정당성을 위해서인지, 자신의 리더로서의 출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멈춰 서서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모두 남궁민수와 관객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분명 편리한 오버액션이다.

자칫 스포일러(spoiler)가 될 위험 때문에 직접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과 관련해 우리 법무사업계의 숙제가 묘하게 겹치며 떠오르는 지점

을 이야기하고 싶다.

「설국열차」의 주제, 우리 업계의 숙제이기도

앞서 말한 바의 좌절을 안고 돌진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영겁회귀는, 나중에 보면 부질없고 허무하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 커티스가 대변하는 그들의 운명이 절대적인 선이나 희생양만은 아니었음에서도 일방적인 동정의 시선은 이중적으로 흔들린다.

하지만 그들과 커티스는, 남궁민수 일행은, 지함은 조금씩은 달랐어도 함께 앞으로 달려 나가야만 했다. 중간에 74%가, 아니 100%가 사망하는 한이 있어도, 생명 있는 자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들은 엔진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뛰쳐 나와야만 했던 것이다. 그 엔진과 윌포드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업계가 처한 상황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법률시장의 독식을 기도하는 변호사 및 인접자격사들과의 투쟁, 성년후견제도·전자등기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 법무사 내부의 다양한 의견 대립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등.

점잖은 말로 문제없는 듯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은 긍정의 힘을 믿는 개인의 성실성 문제라고 치환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았는지는 결과가 말할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의 의식과의 연결점에서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회귀에 복속될 것인가, 영원을 뛰어넘어 결단의 행동을 할 때가! 자, 기차는 달리고 있다. 엔진을 장악하기 위해 나아갈 것인가, 기차 안에 그대로 머무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기차 자체를 전복(顛覆)해 버릴 것인가?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



■장르 : SF, 액션, 드라마

■제작 : 한국 / 125분 / 2013.8.1. 개봉

■등급 : [국내] 15세 관람가

행복한 가정, 참된 부모

최 돈 호 ■ 법무사(서울남부회)



‘문제아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정이 있다’는 말과 같이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교육이다.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공이며 건설자가 될 어린이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라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올바른 가정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의무다. 가정은 사회의 모델이며 인간의 기본도덕은 가정에서 배운다. 바른 사회건설의 기초는 ‘바른 가정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 가정이나 민족의 앞날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다. 가정교육은 어린이가 인간답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가정의 건설은 인간의 고귀한 의무요, 책임이다.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나의 집, 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가정은 어린이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인생의 교실이며 부모는 그 스승이다.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바른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어린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는 쉬우나 ‘부모의 구실’을 하기는 어렵다. 부모로서의 참된 직분을 다할 줄 아는 부

모가 진정한 부모의 자격이 있다. 부모는 지혜와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참된 가정교육은 참된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교육만이 진정한 재산이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는 향락의 놀이터가 아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유산(정신적 유산)을 남기고 업적을 쌓는 창조의 일터다. 산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며 위대한 생은 위대한 창조를 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황금 백만 냥도 자식 하나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했다. 구슬도 갈고 닦아야 빛이 나듯 양서(良書)로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를 거둢나게 하여야 한다.

배움처럼 위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학생의 마음(학문적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은 하늘의 길이요, 성실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성실은 자아완성(自我完成)의 근본이다. ◆



수상

“앵무새를 찾습니다”

최진태 ■ 본지 편집위원·대한법무사협회 감사·법학박사



리켓치아 균에 감염된 앵무새를 찾는 전단

“애완 앵무새라서 사람 어깨에 잘 날아오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날아가 버렸는데, 혹시 발견하시거나 보관하신 분께서는 000-000-0000로 연락 바랍니다. 사례하겠습니다. 지금 병이 있는 관계로 약 투약 중에 있어서 약을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께서는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발목에 검은 색 링 000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나서는데, 이런 전단지 하나가 아파트단지 내외 기둥과 벽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단지 위에는 손바닥에 앉아 있는 앵무새의 사진이 선명한 칼라로 인쇄되어 있었다.

누군가 사랑하는 애완 앵무새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익일에 다시 산책길에 나와 보니 그 전단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있었다.

“앵무새가 리켓치아 균에 감염되어 치료 중이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찾아주신 분에게 금 10만 원을 사례하겠습니다. 꼭 연락 바랍니다.”

애지중지하던 애완용 앵무새를 잃고 가슴앓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수일간 읍소(泣訴)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었다.

1997년 9월 경, 나는 미국 F.B.I에서 주최하는 국제청소년범죄·마약범죄회의 참석차 간 길에 요세미

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을 탐방한 일이 있다. 미국 태평양 근처에 있는 프레즈노(Presno)를 출발해 알팔파가 잘 자라고 있는 대목축지대를 지나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북록(北麓)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공원의 입구에는 히말라야시더가 큰 키를 뽐내고 있었고, 참나무 숲에서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동물의 천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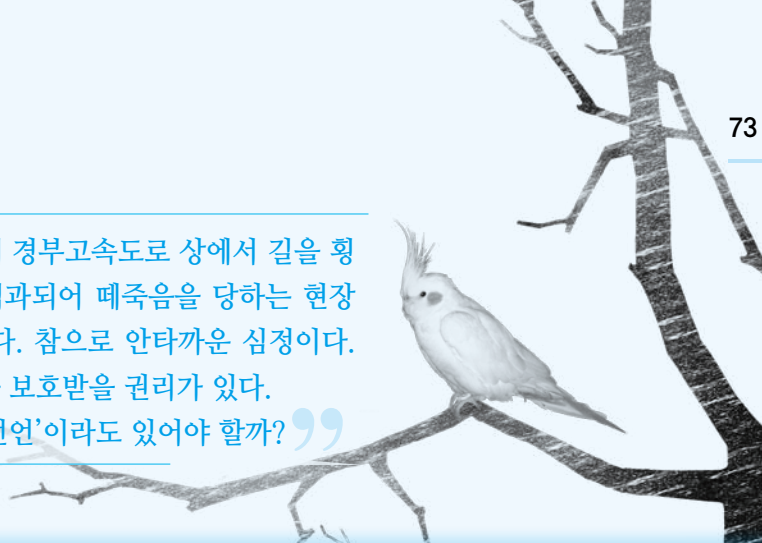
나무 사이사이 통나무로 만든 간이식당과 선물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공원은 사람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특히 검은 곰들이 잘 보호되고 있어 나무 위에서 재주를 부리며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곰을 사냥하는 자에게 3만 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체형에 처하기 때문에 곰 사냥이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사람처럼 곰쓸개를 빼먹거나 하는 몰지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곰들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 친숙하게 여겼다.

자신이 태어난 터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살상 당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전파를 타고 나오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요세미티공원은 뻔뻔한 수렵 속에서 한가로이 뛰어노는 곰, 다람쥐, 토끼 등 동물의 천국이었다.

장엄하게 펼쳐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

“근간에 우리나라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길을 횡단하던 고라니 등이 달리는 차량에 역과되어 폐죽음을 당하는 현장이 뉴스에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야생동물이지만 사람과 더불어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처럼 ‘세계수권(獸權)선언’이라도 있어야 할까?”



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모습에서 또 다른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미국인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열정은 각별해 보였다. 곧고 길게 뻗은 동서고속도로와 남북고속도로 양편에는 군데군데 촘촘한 그물망이 거미집처럼 설치되어 있다. 이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광활한 대륙을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이 달리는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눈물겨운 배려이다.

근간에 우리나라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길을 횡단하던 고라니 등이 달리는 차량에 역과되어 폐죽음을 당하는 현장이 뉴스에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야생동물이지만 사람과 더불어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처럼 ‘세계수권(獸權)선언’이라도 있어야 할까?

“앵무새를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의 앵무새는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으로 되돌아 가보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전단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염체불문하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앵무새를 찾았느냐”고 물어 보았다.

앵무새의 주인으로 보이는 상대방은 밝고 건강한 음성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다. 청년은 “앵무새를 찾았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는 인사말까

지 곁들였다. 나는 내친 김에 찾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다.

청년 말에 따르면, 앵무새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를 날아가 구 KBS 방송국 옆 중국식당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난데없이 날아온 앵무새를 불쌍히 여긴 중국집 종업원 둘이 먹이를 주며 보살피 주니 앵무새도 잘 따라서 종업원 한 명은 “자신들이 그냥 기르자” 하고, 다른 한 명은 “주인에게 돌려주자” 하며 작은 실랑이도 벌였다.

결국 동물협회에 연락해 그곳에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앵무새 주인이 ‘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연락해 보니 마침 보호하고 있는 앵무새가 있다고 하여 찾아가 확인해 보니 잃어버린 자신의 앵무새가 맞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앵무새를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청년의 말을 듣자니 조류든 아니든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씨가 무척 가늠했고, 감염된 앵무새를 치료해 병든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도 가상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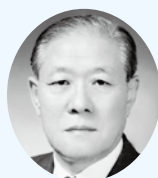
유난히 사람을 잘 따른다는 그 앵무새는 구입가격이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니 구입가의 3분의 1을 쾌척하려고 했던 셈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서고 있다. 이 시간에 앵무새 주인인 그 청년은 앵무새를 안고 단꿈에 취해 있을 것이다. 그의 성씨가 ‘감(甘)씨’라 하니 더욱 그렇다. ◆

[수상]

지팡이로 걷는 나이

박 형 락 ■ 법무사(서울북부회)



출입을 그만둘지언정 지팡이는 안 건다!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밤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게~요?”

어렸을 때 누님이 내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 어리둥절했던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누님은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사람이 늙어 걸음이 불편해지면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 두 다리와 지팡이 해서 세 발이라는 것이다.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사실 지팡이에 의지할 때 걸음은 좀 느리더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지팡이는 얼마나 좋은 물건인가. 그런데 남에게 늙어 보이는 것이 싫어서인지 걷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지팡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희승 교수가 쓴 「지팡이」라는 수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이 서대문 밖 동그재(金華山) 중턱에 살 때 바깥출입을 하려면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춘추가 80을 넘긴 고령의 선친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 힘겹게 다니시기에 사람을 시켜 지팡이를 하나 사드렸는데, 선친은 그 지팡이를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87세로 타계하실 때까지도 “기운이 떨어져서 차라

리 출입을 그만둘지언정 지팡이는 안 건다”고 하셨다면서 이 교수 자신도 친구로부터 받은 지팡이를 집어 던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도 지팡이 짚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도 나이 80을 넘긴지 몇 년이 되었으니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그리 창피할 일은 아니지만, 아직은 다리가 성하여 그런지 지팡이에 손이 가지 않는다.

밤에는 세 발로 걷는 ‘늙은 사람’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 날이었다. 서울지방에 16센티의 폭설이 내렸고 그 전날 밤에 또 3센티의 눈이 내렸다. 기온은 밤낮으로 영하권에서 맴돌고 있으니 견디지 못한 길은 모두 빙판으로 변했다.

아침 출근시간, 나는 길이 미끄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신발에 아이젠을 하고 나서 ‘지팡이를 짚을까’ 망설이다가 그대로 떠났다.

빙판에서 넘어지면 노인들은 주로 고관절 뼈를 다치게 되는데, 그곳이 부러지면 큰 낭패라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겁주는 말을 들었는지라, 잔뜩 긴장을 하고 걷다가 곧 늘 다니던 약간 경사진 길에 다다랐다.

미끄러운 경사 길이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랫다리에 힘을 주고 보폭을 좁게 하여 조심하며 어정어정 걸어 겨우 전철역 입구에 이르렀다.

“아들을 불러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다. 아들이 부축하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며칠을 집에서 쉬며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 내 키에 맞게 조절해 두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만용을 부리지 않고, 위험이 예견되면 지팡이를 애용할 작정이다.”



이제는 계단으로 해서 승강장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계단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왼쪽 오금이 새큰하면서 통증이 왔다. “앗!” 하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몸이 왼쪽으로 기우뚱 기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다시 몸을 추슬렀다. 그러다 가만히 거기 있기도 뭘해서 습관적으로 한 발 한 발 통증을 참으며 계단을 내려가 승강장까지 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로 다시 갈 수도 없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갈 방법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로 난감하고 진퇴유곡의 상황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왔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 아닌가, 후회해 보았으나 ‘사후약방문’이라고 소용없는 후회다.

내가 노쇠해져서 그러는 것이겠거니 하다가 어렸을 때 누님이 말하던 그 그리스 신화 속 수수께끼가 떠올랐다. ‘밤에 세 발로 걷는 동물’이란 바로 나와 같이 ‘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며 이젠 주저 없이 지팡이를 짚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전동차 몇 대를 지나 보낸 후에 가까이 사는 아들을 불러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다. 아들이 와서 부축하고 나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받기 전과 별반 차이도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집에서 쉬기로 하고,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 내 키에 맞게 조절해 두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두 발로 걷는 만용을 부리지 않고 위험이 예견되면 세 발로 걷기로 하고 지팡이를 애용할 작정이다.

하늘을 향해 지팡이 한 번 크게 휘둘러 보자!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취한 적이 있다. 그런 때 지팡이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말이다. 장님에게 지팡이는 안내자요, 눈이요, 길이요. 황혼의 노인에게 지팡이도 이처럼 멀리할 수 없는 형제와 같이 아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고담(枯淡)의 노경(老境)에 산다면 남을 의식할 것 없지 않는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갈 때 지팡이를 쥐고 걷는 것이지만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걷자 “여드레 팔십 리 걸음”보다 더 느리게, 그러면 하늘과 땅은 더 넓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몸이 좀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건재하다는 증표로 헛기침 한 번 하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크게 한 번 휘둘러보는 것도 호연지기가 아니겠는가? ◆

법무사 신규등록

- ▶ 범례: 등 (...) →
등록번호(등록연월일)
- ▶ 게재순서는 소속회별
등록일 순

서울중앙회



金 聖 洪
등8833(2013.07.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5 서원빌딩 3층
Tel. 02)588-0019



李 知 炫
등8840(2013.08.05)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4,
2층
Tel. 02)557-2488



崔 正 烈
등8846(2013.08.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아스트라2,
204호
Tel. 02)532-8407

서울동부회



朴 暲 奎
등8845(2013.08.08)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7 은성빌딩 3층
Tel. 02)415-4560

서울남부회



李 圭 垣
등8832(2013.07.1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4,
503호(신정동, 도림빌딩)
Tel. 02)2695-7334

경기북부회



朴 成 求
등8837(2013.07.26)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2-115, 1층
Tel. 031)878-1800

인천회



吳 東 煥
등8836(2013.07.2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7층
703호
Tel. 032)322-1488

대전충남회



申 祥 熏
등8842(2013.08.06)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변화사회관 203호
Tel. 042)487-1717

충북회



丁 海 童
등8838(2013.07.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72, 201호
Tel. 043)296-3116

대구경북회



張 在 鎬
등8834(2013.07.18)

경북 영주시 휴천동
485-1
Tel. 054)631-0200



諸 榮 鎬
등8844(2013.08.06)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56
Tel. 054)932-2224

부산회



李 贊 載

등8835(2013.07.22)

부산 강서구 대저로
267(대저1동)
Tel. 051)714-2322



金 景 昌

등8843(2013.08.06)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3층(거제동,
희망빌딩)
Tel. 051)714-2213

경남회



禹 秉 熙

등8839(2013.08.0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4-3 세브코아빌딩 401
Tel. 055)547-6144

전라북도회



李 明 荀

등8841(2013.08.05)

전북 익산시 인북로 333
Tel. 063)852-8899

객관식 민사집행법 정해

[제3판]



한 봉 상 著



- 2013년 시행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까지 실어 놓았으며, 기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 시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는 별도로 그 요지를 정리 하였으며, 핵심사항도 따로 정리해 두었다.
- 문제의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쾌한 해설을 하였다.

저자 약력 법무사 겸 공인중개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원경매전문가과정 교수(현), 한국법무교육원 법률실무과정(강제집행) 교수, 대원대학교 부동산경매과정 교수(현), 서울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경매실무 책임교수(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경매실무 및 민사집행법 실무교육교수(현)

▶ 705쪽, 50,000원, 4X6배판(B5), 연세출판사 ☎ 033-744-3357 ▶ 구입처 :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법무사 등록공고

업 무 재 개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업무재개년월일	사 무 소	전 화 번 호
서울남부회 文東源	2 1 1	2013.07.12	서울 구로구 공원로 26, 204호(구로동, 금호아파트)	02)854-5889
인 천 회 吳尙澤	7602	2013.08.02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913(주안동)	032)420-0577
경 남 회 金貴敦	4235	2013.08.01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92	055)648-4848
제 주 회 金康一	8280	2013.08.02	제주 제주시 노형동 945 유나이티드(아) 730호	064)744-1950

소속변경등록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변경년월일	사 무 소	전 화 번 호
서울서부→서울중앙 孫賢晶	8617	2013.07.25	서울 서초구 우면동 66-2 우면종합상가 제601호	02)529-5172
경기중앙→서울중앙 趙永植	5965	2013.08.01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615호	02)736-0024
서울동부→경기북부 吳泰明	2752	2013.07.22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704호(별내동, 별내노블레스)	1 5 7 7 - 1 0 5 3
인 천→경기북부 韓元奎	8560	2013.07.26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06-3, 2층	031)543-2340
서울남부→경기중앙 金基賢	7754	2013.07.25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1 신양타운 206호	031)480-4493
경기북부→경기중앙 李學茂	2984	2013.08.02	경기 광명시 광명동 200-6 광명한진타운 12층 1211	02)2683-0222

등록사항변경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전 화 번 호
서울중앙회 金順坤	2976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 이남장 4층	02)532-8801
서울중앙회 千星熙	7441	사무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11 솔메리빌딩 302호	02)6326-7315
서울중앙회 李桐松	8749	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0, 1209호(역삼동, 두꺼비빌딩)	02)525-8891
서울중앙회 李滿鐵	7398	사무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30-2 유레스코빌딩 405호	02)774-3730
서울중앙회 任洋基	6479	사무소	서울 종로구 송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309호	02)757-0880
서울중앙회 張鎰翼	5 1 6	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1번지 삼영빌딩 704	02)753-1457
서울중앙회 秦瑩培	3911	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1-7, 101호(서초동, 서한빌딩)	02)3486-9447
서울중앙회 高一洙	6497	사무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4-34 한성빌딩 302호	02)873-3327
서울중앙회 金大植	7680	사무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1002호	02)720-5309
서울동부회 延圭敏	6007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2-10 쌍용플래티넘리버오피스텔 422호	02)484-1647
서울동부회 張慶勳	7490	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73, 201호(자양동, 동원빌딩)	02)456-3992
서울남부회 李永美	7284	사무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208호	02)3286-9003
서울남부회 金沃台	7328	사무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208호	02)3286-9903
서울남부회 吳明虎	7987	사무소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1 아이파크 212호	02)2694-9977
서울남부회 張淳白	5804	사무소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 5, 408(신정동, 에벤에셀프라자)	02)2644-7334
서울서부회 李承遠	7493	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7, 325호 (공덕동, 풍림빌딩)	02)711-0720
경기북부회 趙庚台	3913	사무소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50, 2층	031)571-3050
경기북부회 盧慶鉉	7565	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502호	031)901-5932
인 천 회 張 山	4615	사무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1, 502호(작전동, 상운빌딩)	032)542-2530
인 천 회 李 煌	8037	사무소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00 (십정동)	032)874-1802
인 천 회 車昌鍊	7991	사무소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00 (십정동)	032)874-1802
인 천 회 朴鍾基	5801	사무소	인천 부평구 충선로 209번길 21, 402호(삼산동, 대상프라자)	032)505-6009
경기중앙회 鄭秉燦	5462	사무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2, 2층 201호(안양동, 인수재빌딩)	031)443-8822
경기중앙회 李垣錫	8349	사무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65-6	031)8059-3330

경기중앙회	金容基	7864	사무소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29번길 18	031)643-2222
경기중앙회	丁載堉	2406	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408호	031)410-9484
경기중앙회	李熙宰	6621	사무소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98 대주빌딩 401호	031)398-2500
경기중앙회	尹景洙	7272	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3 진양빌딩 130호	031)482-5934
경기중앙회	崔昶鎔	2706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39	031)212-5002
경기중앙회	文濟寬	6268	사무소	경기 군포시 당정동 970-9 메디컬빌딩 202호	031)429-9410
경기중앙회	羅佑美	8266	사무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27, 2층	031)701-5336
경기중앙회	全濟吉	8808	사무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0, 2층(금광동)	031)701-5336
대전충남회	朴英一	3647	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2-11, 3층	041)562-9400
부 산 회	朴勝朱	7850	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702호(거제동, 세헌빌딩)	051)714-6066
부 산 회	崔二奎	6633	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0, 201호(거제동, 미르코아빌딩)	051)863-6207
광주전남회	韓希進	1993	사무소	광주 서구 치평동 1185-6 휴먼빌딩 403호	062)361-2000
광주전남회	金海錫	1926	사무소	광주 동구 자산동 709-25	062)232-8598
전라북도회	文禹坤	2141	사무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46	063)642-2231
제 주 회	梁眞赫	7295	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31, 5층(이도이동, 정주빌딩)	064)748-4414

휴 업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휴업기간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휴업기간
서울중앙회	金貴坤	3625	2013.07.01 ~ 2014.06.30	인 천 회	盧承炫	5464	2013.08.01 ~ 2015.07.31
서울중앙회	梁大一	6223	2013.07.25 ~ 2015.07.24	인 천 회	金光烈	2989	2013.08.01 ~ 2015.07.31
서울중앙회	李昌熙	7282	2013.07.30 ~ 2014.12.30	인 천 회	林喜燮	4635	2013.08.01 ~ 2013.12.31
서울중앙회	柳明賢	2902	2013.08.01 ~ 2015.07.31	강 원 회	金泰正	3042	2013.07.11 ~ 2015.07.10
서울동부회	金炯周	6326	2013.08.05 ~ 2015.08.04	대전충남회	金用錫	7919	2013.08.01 ~ 2015.07.31
서울남부회	李喜福	8473	2013.07.04 ~ 2015.07.03	대구경북회	金正鎰	5903	2013.07.10 ~ 2013.10.31
서울남부회	李樹燾	4296	2013.07.29 ~ 2015.07.28	대구경북회	崔相夏	4650	2013.07.30 ~ 2015.07.29
경기북부회	裴相一	8196	2013.07.01 ~ 2015.06.30	부 산 회	方福龍	4611	2013.08.01 ~ 2014.07.31
인 천 회	朴聖勉	5896	2013.07.06 ~ 2015.07.05	광주전남회	劉水玄	8396	2013.07.29 ~ 2015.07.28
인 천 회	李吉浩	5835	2013.07.15 ~ 2015.07.14	광주전남회	白亨善	8685	2013.08.07 ~ 2013.11.06
인 천 회	韓雄鎬	991	2013.07.15 ~ 2015.07.14	제 주 회	金勝正	5091	2013.07.26 ~ 2015.07.25

등록취소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등록취소 년 월 일	등록취소사유	소 속 회	성 명	등록번호	등록취소 년 월 일	등록취소사유
서울중앙회	白宰昊	7886	2013.07.12	기타 (2013.06.27)	경기중앙회	具永旭	893	2013.07.29	폐업 (2013.07.25)
서울중앙회	都炯煥	7229	2013.08.01	폐업 (2013.07.30)	강 원 회	金相培	1035	2013.07.23	폐업 (2013.07.18)
서울중앙회	黃善昊	3008	2013.08.05	폐업 (2013.08.01)	대전충남회	姜正善	5963	2013.08.06	폐업 (2013.07.25)
서울동부회	羅鍾萬	8381	2013.07.17	폐업 (2013.07.15)	충 북 회	李喆源	1110	2013.08.06	폐업 (2013.07.31)
서울동부회	權昇鉉	31	2013.07.29	사망 (2013.06.20)	충 북 회	洪滿杓	1113	2013.08.06	폐업 (2013.07.31)
서울동부회	金泰華	5947	2013.08.05	사망 (2013.06.28)	대구경북회	裴春模	1375	2013.08.06	폐업 (2013.07.31)
서울남부회	朴井圭	4826	2013.07.11	폐업 (2013.07.10)	부 산 회	鄭五潤	4575	2013.08.01	폐업 (2013.07.30)
인 천 회	全漢相	2852	2013.07.23	폐업 (2013.07.22)	부 산 회	林京男	3176	2013.08.07	폐업 (2013.08.05)
인 천 회	金榮根	3871	2013.08.06	폐업 (2013.07.12)	광주전남회	金基鶴	3046	2013.08.01	폐업 (2013.07.29)
경기중앙회	崔桑源	3570	2013.07.11	폐업 (2013.02.22)	전라북도회	晋件錫	2215	2013.07.17	사망 (2013.06.28)
경기중앙회	金成雄	2530	2013.07.12	기타 (2013.06.20)	전라북도회	吳 坤	8114	2013.07.25	폐업 (2013.07.22)
경기중앙회	李景淑	5245	2013.07.15	폐업 (2013.07.12)	전라북도회	柳鍾根	5172	2013.08.09	사망 (2013.07.29)
경기중앙회	金豪培	8190	2013.07.19	사망 (2013.06.13)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Newsletter

협회, 「민사소송규칙」 개정 보충의견서 대법원 제출 법원 허가로, 법무사 '소액대리' 가능토록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 「민사소송규칙」 개정건의안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에서 위임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는 소액사건의 경우는 영세서민들의 실제 법률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 당해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무사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위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영세서민들의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무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 등의 내용으로 보충의견서(서민층 법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건의안' 관련)를 제출하였다.

우리 협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생협약 제안 ‘법조지역 발전·협력 협정’ 체결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8월 초, 대한변호사협회에 최근의 등기시장과 관련하여 상생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최근 등기업무의 수임과 관련하여 일부 법무법인에서 법무사사무소의 문제된 비위 사무원 채용,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임료 과다 인하, 등기 사건 독식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비위 사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사건의 부당유치 금지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하고자 '법조지역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에 관해 규제할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위 협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협회, 「채권추심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 채무자 대리인에 '법무사 포함' 요구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계류 심의 중인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리인에 '법무사'가 빠져 있으므로,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영남지역 연수 실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지난 8월 15일(목)~18일(일), 대구시 오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서울, 부산, 대전지역에 이어 4번째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영남지역(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회원들(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3박4일 집중연수로 진행되었으며, 8월 18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 영락양로원 및 참사랑 양로원에서 현장실습도 진행하였다.

이번 영남지역 연수 이후에는 바로 대구 가정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 영남지역 각 가정(지방) 법원에서 전문직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성모병원과 '건강검진' 협약 체결



서울중앙회(회장 노용성)는 지난 8월 9일(금) 오전 10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21층 VIP회의실에서 노용성 회장과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김영균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검진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서울중앙회는 내실 있는 회원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중앙회 휴먼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단일병동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성모병원과의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 회원 가족, 사무직원, 사무직원 가족이 건강검진 시 할인혜택 및 우대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중앙회와 서울성모병원과의 주요 협약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성모병원 본관, 별관 특별 건강검진 우대 프로그램 제공

- ① 별관 특별건강검진 우대 프로그램(남 40만 원/여 42만 원 -할인율 : 남35%, 여36%) : 베이직 검진(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기초검사 및 호흡기), 진단의학검사(심혈관, 간기능, 당뇨, 신장, 빈혈, 면역, 암표지자 등)
- ② 본관 특별건강검진 우대 프로그램(남/여 80만 원 - 할인율 : 남35%, 여37%) : 베이직 검진 및 대장내시경, 남성·여성 초음파검사 포함.
- ③ 다른 저가 건강검진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각 전문의 교수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후 이상징후 발견 시 외래진료까지 원스톱연계서비스를 제공.

2. 위 특별프로그램 외 본관 개인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용 시 10% 할인(추가검사 제외)

3. 개별 예약 이후 건강검진 당일 서울중앙회 발행 '건강검진 신청서' 지참 필수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일산복음병원과 '진료지정병원' 협약 체결

경기북부회(회장 유종우)는 지난 7월 19일(금), 유종우 회장과 이덕창 일산복음병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복음병원과 진료지정병원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으로 경기북부회 소속 회원들과 사무소 직원 및 그 직계가족들은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주택관리사 대상, 「집합건물 및 주택법」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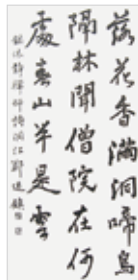


부산회 배종국 회장은 지난 8월 22일(목) 부경대학교에서 부산광역시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및 주택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 부산회 집행부는 지난 8월 8일, 지난해 8월 퇴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조용현 계장을 방문하여 장기간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



정우진 법무사(광주전남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선



광주전남회(회장 김치주) 여수 지부 소속 정우진 법무사가 지난 7월 26일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제49회 전국 전라남도 미술대전에 휴정선사의 시(詩)를 출품하여 서예 부문에 입선하였다. ◆

칭·찬·릴·레·이

⑥번째 칭찬 법무사

‘윤영복 법무사’가 이성수법무사를
칭찬합니다!

이성수 법무사님(경남회)은 지방회가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법무사님은 현재 경남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5월 16일에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4개월 여를 보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새 내기 회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법무사님은 제가 마침 부산지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우리 부산회와 경남회간의 업무공조와 교류를 통해 잘 알게 된 분입니다.

오늘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자리이니 그간 제가 보고 느낀 이 법무사님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무사님은 아주 열성적인 분으로, 경남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의욕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공조를 맺고 ‘생활법률 실무과정’을 개설,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을 통해 1사 1법무사제도, 경남교육청과도 1교 1법무사제도 등 신선한 기획들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창원시청 등의 관계기관들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회를 맡고 있는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무사님의 이런 의욕적인 활동들이 향후 우리 지방회가 나아갈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법무사님은 우리 업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수 법무사님은 우리 업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사건을 유치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탄하며 이를 타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 신속히 법무사들이 습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지방회 회무도 온건하시지만 강단있게 잘 처리하시지요.

개인적으로도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성수 법무사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회무의 향상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칭찬릴레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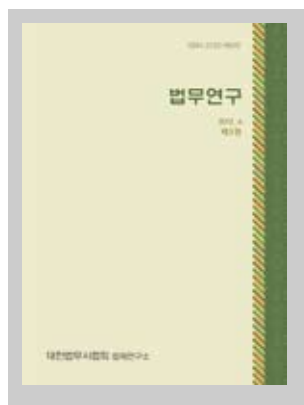
회지편집위원회 → 오세완 → 박태환 → 기원섭 → 조태익 → 윤영복 → 이성수 법무사

『법무연구』 제4권 원고모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법무연구』 제4권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종 류 : 연구논문, 비교법연구, 판례평석, 실무연구 등
- 내 용 : 법학 및 법무사의 업무, 실무 및 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
- 작성방법 :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
A4용지 20매(11point 기준) 내외
- 투고요령 : 전자우편의 첨부파일로 제출
- 보내실 곳 : 1906kja@hanmail.net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 기 한 : 2013년 12월 31일

※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무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 지급과 함께
『법무연구』 제 4권에 게재됩니다.



법무연구 편집위원회



www.kabl.kr



대한민국법원
COURT OF KOREA

2013. 9. 16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ecfs.scourt.go.kr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 이어 신청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임차권등기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http://ecfs.scourt.go.kr>